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10 호】

2014년 09월 23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1600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1
고양시 조례 제1601호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고양시 조례 제1602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7
고양시 조례 제1603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고양시 조례 제1604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고양시 조례 제1605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9
고양시 조례 제1606호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7
고양시 조례 제1607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규 칙

고양시 규칙 제905호	고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86
--------------	-----------------------	----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49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	---------------------	-----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 양 시 시 보

제 1110호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26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06
고양시 고시 제2014-27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3
고양시 고시 제2014-2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2호선 외 1개노선(서오릉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14
고양시 고시 제2014-274호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9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1287호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공람 공고	162
-----------------------	-----------------------------------	-----

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00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동강령”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행동강령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국내외 활동 승인신청 등) ① 의원은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활동개시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

는 기관·단체는 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영 제14조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활동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영 제15조에 따라 영리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금전거래 등 신고) 의원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금전거래 등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 하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고양시 소속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②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이 그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접적 이해관계 또는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그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고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을 포함하여 제14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참석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적 행동강령) 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세부적 행동강령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h2 style="margin: 0;">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제5조 관련)</h2>				
신 고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 청 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제6조 관련)				
신 고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div style="text-align: center;"> <p>20 . . .</p> <p>신고자 (서명)</p> </div>				

[별지 제3호 서식]

<h2 style="margin: 0;">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제7조 관련)</h2>				
신고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월)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20 . . .</div> <div>신고자 (서명)</div> </div>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정

□ 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나. 국내외 활동 승인신청 등, 외부강의·회의, 영리행위, 금전거래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다.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7조)
- 라.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신고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정함.(별지 제1호~제3호 서식)

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01호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각호”를“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있었던 자”를 “있었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7일 전”을 “7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공익등”을 “공익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본부)”를 “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표자등”을 “대표자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간사1인”을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2.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에서 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 및 처리 방안 등

3.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 제목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를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규제신고센터”를 “규제신고센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범위에서 수당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팀장 성명	규제개혁추진단 이홍연
	담당자 성명·전화	전효창 (8075-207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5. (생략)</p> <p>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조(기능)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 ----- -----</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제3항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민생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푸른도시사업소장,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p> <p>③ 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u>있었던 자</u></p> <p>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u>있는자</u></p> <p>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u>있었던 자</u></p> <p>4. <u>4급이상</u>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u>있었던 자</u></p> <p>5. <u>기타</u>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u>풍부한자</u></p> <p>⑤ <u>위원중</u>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제5조(회의)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u>부의사항</u>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u>7일전까지</u>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u>공익등</u>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u>국(본부)·소장(담당관, 과장 포함)</u>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u>대표자등</u>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1. ----- ----- <u>있었던 사람</u></p> <p>2. ----- <u>있는 사람</u></p> <p>3. ----- ----- <u>있었던 사람</u></p> <p>4. <u>4급 이상</u> ----- ----- <u>있었던 사람</u></p> <p>5. <u>그 밖에</u> ----- <u>풍부한 사람</u></p> <p>⑤ <u>위원 중</u> ----- ----- ----. <u>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5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회의에 부치는 사항</u>----- ----- <u>7일 전</u>-----.</p> <p>④ -----, ----- <u>공익 등</u> ----- -----.</p> <p>⑤ ----- <u>국</u> ----- -----.</p> <p>⑥ ----- ----- <u>대표자 등</u>----- -----.</p>

현행	개정안
<p>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간사1인</u>을 둔다.</p> <p>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u>담당관·과장</u>이 된다.</p> <p><u><신 설></u></p>	<p>제6조(간사) ① ----- ----- <u>간사 1명</u>-----.</p> <p>② ----- <u>장</u>-----.</p> <p>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2.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에서 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 및 처리방안 등 3.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p>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u>규제신고센터</u>를 둔다.</p>	<p>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 ----- <u>규제신고센터</u>-----.</p>
<p>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수당 등) ----- ----- -----범위에서 수당 등----- -----. -----.</p>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수를 확대하여 안전 유형별 또는 접수 량에 따라 필요시 적정위원을 소위원회로 구성, 신속한 운영을 통한 심의지연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며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규제관련 안전심의 시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위원 불참과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위원회 개최 지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급을 요하는 안전은 필요시 현장 회의를 병행하는 등 위원 구성수를 확대(**기존12명 ⇒ 변경20명**)하여 심의지연을 사전에 방지, 비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보완코자 함. (안 제3조제1항)
- 나. 안전 수요가 많은 분야는 적정위원을 선정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위원구성 및 운영규정 추가 신설 (안 제6조의2제1,2,3항)

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02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인적자원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인적자원담당관 명 재 성
	팀 장 성 명	조직교육팀장 정 재 선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근 영 (8075-2398)

[별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고 양 시 청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덕 양 구 청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일 산 동 구 청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 산 서 구 청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71
원신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261
홍도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홍도로454번길 44
성사1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01
성사2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42번길 6-6
효자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61
신도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신도길 8
창릉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88
고양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5
관산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89
능곡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83
화정1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97
화정2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32
행주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4번길 11
행신1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1-12
행신2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30
행신3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78
화전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1
대덕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60-22

기 관 명	소 재 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22-21
중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24
정발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2
풍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36
백석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5
백석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
마두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18
마두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66
장항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225번길 72
장항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14
고봉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97-18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5
일산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83
일산3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58
탄현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36
주엽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9
주엽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78
대화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8
송포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43
송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50-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기 관 명	소 재 지	
고 양 시 청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 양 시 청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덕 양 구 청	고양시 덕양구 청로 5(화정동 955번지)	덕 양 구 청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일 산 동 구 청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606(마두동 815번지)	일 산 동 구 청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	
일 산 서 구 청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816(대화동 2199번지)	일 산 서 구 청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박재궁길 37(주교동 265-1번지)	주교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71	
원신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덕양대로 537(신원동 437-25번지)	원신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261	
홍도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윗말길 20(성사동 34-1번지)	홍도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홍도로454번길 44	
성사1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로 48(성사동 408-1번지)	성사1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01	
성사2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길 35(성사동 734-1번지)	성사2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42번길 6-6	
효자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효자로 63(지축동 522-12번지)	효자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61	
신도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길 10(삼송동 143-1번지)	신도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신도길 8	
창릉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630(동산동46번지)	창릉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88	

현 행			개 정 안		
기 관 명	소 재 지	기 관 명	소 재 지		
고양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5(고양동 195-1번지)	고양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5		
관산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799(관산동 238-1번지)	관산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89		
능곡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능곡초교2로 2(토당동 335-4번지)	능곡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83		
화정1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51(화정동 864번지)	화정1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97		
화정2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77(화정동 994번지)	화정2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32		
행주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우애2로 18(토당동 885-9번지)	행주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4번길 11		
행신1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샐터마을길 4(행신동 992번지)	행신1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1-12		
행신2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24(행신동 717번지)	행신2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30		
행신3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햇빛마을길 24(행신동 933번지)	행신3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8번길 78		
화전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길 177(화전동 226-13번지)	화전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1		
대덕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78(덕은동 191-9번지)	대덕동주민센터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60-22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공단길 56(식사동 632번지)	식사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22-21		
중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77번지(중산동 1573-4번지)	중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24		
정발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500(정발산동 1212번지)	정발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2		
풍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풍리고개길 122(풍동 349-16번지)	풍산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36		
백석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3(백석동 1147번지)	백석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5		

현 행			개 정 안		
기 관 명	소	제 지	기 관 명	소	제 지
백석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75(백석동 1331-1번지)	백석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
마두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2(마두동 727번지)	마두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18
마두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6(마두동 782번지)	마두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66
장항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4로	83(장항동 578-2번지)	장항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25번길 72
장항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길	3(장항동 900번지)	장항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14
고봉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34(문봉동 57-4번지)	고봉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97-18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시장로	194(일산동 963-6번지)	일산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5
일산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시장로	3(일산동 1679번지)	일산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83
일산3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강전로	108(일산동 1100번지)	일산3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58
탄현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49(탄현동 1488-3번지)	탄현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36
주엽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41(주엽동 69번지)	주엽1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9
주엽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58(주엽동 27번지)	주엽2동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78
대화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34(대화동 2035번지)	대화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8
송포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화이로	58(대화동 767-2번지)	송포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43
송산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84(덕이동 446-9번지)	송산동 주민센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50-7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 이유

2014. 1. 1.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인하여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구 주소(지번주소)를 삭제하고,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구 지번주소 삭제 및 변경된 도로명주소 반영(안 별표)

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03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른 동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소관과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장 성명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팀장 성명	예산관리팀장 홍길표
	담당자 성명·전화	권용환 (031-8075-217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제출) ----- ----- ---- 제7조----- ----- -----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u>
<신 설>	②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③----- ----- ----- -----.
1. <u>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u>	1. ----- -----다만,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른 동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주민참여예산위원(보궐위원 포함)의 임기를 명문화하고, 위원 중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된 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보궐위원 모집 시기 등을 명문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안 제12조제2항)
 - ※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 나. 위원회 위원 중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은 다른 동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촉 사유로 신설(안 제12조 제3항제1호)
- 다. 지출연도폐쇄 시기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동하기 위하여 현 위원의 임기를 2015년도 2월 말까지 연장

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04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평가보고”를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출연금 등 처리방법”을 “협력 사업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연금 등은”을 “협력 사업비는”으로 해서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세 정 과 장 이 현 옥
	팀 장 성 명	세 외수입팀장 양 미 례
	담 당 자 성명·전화	양 미 례 (8075-2255)

[별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I. 총괄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평가(10점)	(10) (6)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인 경우, 순 자본 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20) (7) (7) (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8)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u>22</u>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u>9</u>	
	가. 지역사회에 대한 <u>기여실적</u> 나. 자치단체와의 <u>협력사업 계획</u>	(5) (4)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6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세입·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입금 수납개선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시스템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 하되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고양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 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u>평가보고</u> 등을 매년 상 · 하반기별로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 ----- <u>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신설></p> <p>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u>출연금</u> 등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제19조(협력 사업비) ①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 ---- <u>협력 사업비</u>는 ----- -----.</p>

현행			개정안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I. 총괄			I. 총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평가(10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10) (6) (4) (20) (7) (7) (6)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3. 지 역 주 민 이용 편의성		21	3. 지 역 주 민 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 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8) (8)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4. 금 고 업 무 관리능력		21	4. 금 고 업 무 관리능력		<u>22</u>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8) (5) (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 역 사 회 기여 및 시와 협 력 사 업 추진능력		10	5. 지 역 사 회 기여 및 시와 협 력 사 업 추진능력		<u>9</u>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5)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현행	개정안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 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여 고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6점) <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입금 수납 개선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R시스템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및 계획으로 평가하되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등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입금 수납 개선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라. (현행과 같음)</p> <p>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9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삭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안전행정부에서 종전예규를 폐지하고 새로운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를 시행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최근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토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 금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협력 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토록 의무화 함(안 제19조제1항)

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05호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의 개보수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전용 공간과 시설·설비의 확보
2. 신규 설치 센터의 경우 지하 및 5층 이상에 설치 지양
3. 센터의 시설·설비는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제한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
2. 관내 학교 교육 관련 공무원 1명
3.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1명
5. 센터 협의회를 추천을 받은 센터장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1명

제11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아동 업무 담당 과장”을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 「고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아동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아동청소년과장 김 윤 영
	팀 장 성 명	아동보호팀장 김 경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주 영 (8075-3356)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u>자</u>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u>사람</u> ----- ----- -----. 4. ~ 5.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u>자</u> 는 고양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저소득 아동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1. ~ 6. (생략)	제4조(이용의 대상) ----- ----- <u>사람은</u> ----- ----- ----- ----- <u>따른</u> ----- -----.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u>자</u> 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 ----- ----- ----- ----- ----- ----- <u>따라</u> ----- -----.

현행	개정안
<p>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지역 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복지사업, 다른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아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설치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 설치를 지양하고 센터가 한 곳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시설의 개보수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전용 공간과 시설·설비의 확보 2. 신규 설치 센터의 경우 지하 및 5층 이상에 설치 지양 3. 센터의 시설·설비는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 제한 <p>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 ----- ----- -----.</p>

현행	개정안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위원중에서</u> 호선한다.</p> <p>③ <u>위원</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시장</u>이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u>당연직</u> : 아동복지 업무 담당 <u>국장</u></p> <p>2. <u>위촉직</u> 가. <u>아동복지,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u> 나. <u>고양시 아동 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의 장</u> 다. <u>고양시의회 시의원 1인</u> 라. <u>고양시 학교 교육 관련 공무원 1인</u> 마. <u>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표 1인</u> 바. <u>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인</u></p>	<p>② ----- ----- ----- ----- ----- <u>위원 중</u>-----.</p> <p>③ <u>위촉직 위원</u>----- ----- --- <u>시장</u>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1. <u>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u></p> <p>2. <u>관내 학교 교육 관련 공무원 1명</u></p> <p>3. <u>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u></p> <p>4. <u>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1명</u></p> <p>5. <u>센터 협의회</u>의 추천을 받은 <u>센터의 장 1명</u></p> <p>6. <u>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1명</u></p>

현행	개정안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p>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신 설></p> <p>② ~ ④ (생략)</p> <p>제16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 ----- 1명----- -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p> <p>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과 같음)</p> <p>제16조(위원회의 수당) ----- ----- 제13조제5항-----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의 자격요건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11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06호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
2. 고양교육지원청 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고양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아동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 · 성명	아동청소년과 김 운 영
	팀 장 직위 · 성명	아동보호팀장 김 경 희
	담 당 자 직위 · 성명	이 미 란 (8075-3357)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 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하고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지원을 통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심의내용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고양시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07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영 제2조제2항 제1호”를 “영 제2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준공연도”를 “준공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2항제2호”를 “영 제2조제3항제2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조제2항제3호”를 “영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영 별표 1 제2호”를 “영 별표 1 제6호”로 하고, “요건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를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된다.”를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었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③ 조합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작성 등은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등을 준용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이 취소된 경우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이 업무추진에 사용한 비용 등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취 과도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소, 연락처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6항제1호 및 제2호)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해산된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⑨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⑩ 시장은 제9항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1조의4제10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일 3월전부터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5. 제5순위 :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2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일 3월전부터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6. 제6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9조제1호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을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은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2조제6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을 “정비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 보조 기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①제13조의3은 201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6조의2는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등이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제16조의2제6항 신청의 기산일인 설립인가 취소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한다. 다만 2014년4월1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등이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조례 제1592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4월11일을 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고시일로 본다

소관과		도시재생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 · 성명	도시재생과장 송 경 환
	팀 장 직위 · 성명	도시재생팀장 윤 주 형
	담 당 자 성명 · 전화	엄 영 식 (8075-317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9.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u>법 제4조제5항</u> 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 ----- ----- <u>법 제4조제6항</u> ----- ----- ----- ----- -----.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u>의한</u>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3. (생략)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 ----- ----- <u>제2조제2항</u> ----- ----- ----- --. 1. ----- ----- ----- ----- ----- ----- <u>따른</u> ----- ----- ----- 2.·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p> <p>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생략)</p> <p>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 + [(\text{준공년도} - 1983\text{년}) \times 2]$, 4층 이하의 건축물 $20 + (\text{준공년도} - 1983\text{년})$</p> <p>다. (생략)</p> <p>2. (생략)</p> <p>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불일치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p> <p>⑤ (생략)</p>	<p>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 ----- ----- -----.</p> <p>1.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준공연도----- -----준공연도----- -----</p> <p>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2조제3항제2호----- ----- ----- -----따른----- ----- -----.</p> <p>④ 영 제2조제1항제1호----- ----- ----- ----- -----.</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 ⑤ (생략)</p> <p>⑥ 영 별표 1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u>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u></p> <p>⑦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p> <p>⑧·⑨</p>	<p>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영 별표 1 제6호----- -----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⑦ ----- -----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었다 ----- ----- -----.</p> <p>⑧·⑨ (현행과 같음)</p>
<p>제6조 (생략)</p> <p>1. (생략)</p> <p>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서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p> <p>3.~ 8. (생략)</p> <p>제13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p> <p>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호에서 “<u>조례로 정하는 비율</u>”이란 다음</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p> <p>3.~ 8.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각 호를 말한다.</u></p> <p><u>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u></p> <p><u>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u></p> <p><u>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u>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u></p> <p><u>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u></p> <p><u>③ 조합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u>2.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u></p> <p><u>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u></p>	

현행	개정안
<p><u>의서</u></p> <p><u><신 설></u></p>	<p>제13조의3(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p> <p>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2분의1</p> <p>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55%</p> <p>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 회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p> <p>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 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 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 지등소유자의 명부</p> <p>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p> <p>③ 조합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4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p> <p>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p> <p>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p> <p>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사동의서</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p>	<p>1.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p> <p>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산동의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지 아니할 수 있다.</u></p> <p><u>1. 시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u></p> <p><u>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u></p> <p><u>3. 시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u>제15조(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u>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인 이상</u></p> <p><u>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u></p> <p><u>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p> <p><u>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u>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u></p> <p><u>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u></p>	

현행	개정안
<p><u>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u></p> <p><u>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u></p> <p><u>⑦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작성 등은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등을 준용한다.</u></p> <p><u><신 설></u></p>	<p><u>제15조의2(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시장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u>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u></p>

현행	개정안
	<p><u>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명 이상</u></p> <p><u>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u></p> <p><u>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p> <p><u>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u>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u></p> <p><u>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u></p>

현행	개정안
<p>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p> <p>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p> <p>1.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p> <p>2.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이 취소된 경우</p> <p>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p>	<p>수 있다.</p> <p>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⑦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작성 등은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등을 준용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민중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u></p> <p><u>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u> <u>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u> <u>3. 그 밖에 조합이 업무추진에 사용한 비용 등</u></p> <p><u>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u></p> <p><u>④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취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u></p> <p><u>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⑥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u></p>	

현행	개정안
<p><u>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u>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u></p> <p><u>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소, 연락처 포함)와 증빙자료</u></p> <p><u>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u></p> <p><u>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6항제1호 및 제2호)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원 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⑨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p> <p>⑩ 시장은 제9항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4제10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6조의2(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

현행	개정안
	<p><u>합설립이 취소된 경우</u></p> <p><u>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u></p> <p><u>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u></p> <p><u>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u></p> <p><u>3. 그 밖에 조합이 업무추진에 사용한 비용 등</u></p> <p><u>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u></p> <p><u>④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취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u></p> <p><u>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⑥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u></p>

현행	개정안
	<p><u>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u>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u></p> <p><u>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소, 연락처 포함)와 증빙자료</u></p> <p><u>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u></p> <p><u>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6항제1호 및 제2호)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u></p>

현행	개정안
<p>제26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p>	<p><u>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해산된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u></p> <p><u>⑨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u></p> <p><u>⑩ 시장은 제9항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4제10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u></p> <p>제26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p>

현행	개정안
<p>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를 말한다.</p> <p>1. (생략)</p> <p>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 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u>자</u>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u>자</u></p> <p>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u>자</u></p> <p>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u>자</u></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u>자</u> 이어야 한다.</p> <p>③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p>	<p>----- ----- <u>사람을</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사람</u> ----- ----- <u>사람</u> -----</p> <p>3. ----- ----- ----- ----- <u>사람</u> -----</p> <p>4. ----- ----- ----- ----- <u>사람</u> -----</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u>사람</u> -----.</p> <p>③ ----- ----- -----</p>

현행	개정안
<p><u>의하여</u> 공급한다.</p> <p>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u>자</u></p> <p>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u>자</u></p> <p>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u>자</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49조(정비기금의 재원)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u>15퍼센트</u> 이상의 금액</p> <p>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p>	<p><u>따라</u>-----.</p> <p>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u>사람</u></p> <p>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u>사람</u></p> <p>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u>사람</u></p> <p>4. 제4순위 :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일 3월전부터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u>세입자</u></p> <p>5. 제5순위 :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2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일 3월전부터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u>세입자</u></p> <p>6. 제6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u>사람</u></p> <p>제49조(정비기금의 재원) ----- -----.</p> <p>1. ----- ----- ----- - <u>10퍼센트</u>-----</p> <p>2. 법 제62조에 따른----- -----</p>

현행	개정안
<p>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p> <p>3. ~ 7. (생략)</p> <p>제50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p> <p>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p> <p>3. 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한 임시 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p> <p>4. 5. (생략)</p> <p>6. (생략)</p> <p>7. (생략)</p> <p>제51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정비기금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p> <p>-----</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50조(정비기금의 용도) -----</p> <p>-----.</p> <p>1. -----</p> <p>제60조에 따른-----</p> <p>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p> <p>-----</p> <p>3. ----- 따른-----</p> <p>-----</p> <p>-----</p> <p>4. 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제51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 따라 운용하</p> <p>되, 「지방재정법」 제34조-----</p> <p>-----.</p> <p>② ----- 제</p> <p>5조에 따라-----</p> <p>-----.</p>

현행	개정안
<p>제5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p> <p>④·⑤ (생략)</p> <p>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u>이 된다.</p> <p>제5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 2. (생략)</p> <p>3. <u>기타</u>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u>부의하는</u> 사항</p>	<p>제5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장은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정비기금업무 담당팀장----- --.</p> <p>제54조(위원회의 기능)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회의에 부치는 --</p> <p><삭제></p>

현행	개정안																																								
<p>[별지 제6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동의서</p> </div> <div> <p>1. 소유자 인적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성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생년월일</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주민등록상 현주소</td> <td></td> <td>전화번호</td> <td>() _</td> </tr> </table> <p>2. 소유권 현황</p> <p>※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8"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권리 내역</td> <td rowspan="4"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토지</td> <td style="width: 25%;">소재지(공유 여부)</td> <td style="width: 15%;">면적(m²)</td> </tr> <tr> <td>(계필지)</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td> <td>소재지</td> <td>동수</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td> <td>설정토지</td> <td>지상권의 내용</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able> <p>※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소유권 위치</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td> </tr> <tr> <td>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td> <td style="width: 10%;">m²</td> <td>등기상 대지지분(면적)</td> <td style="width: 10%;">m²</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본인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조사에 동의합니다.</p> <p>동의자 - 성명 : 년 월 일</p> <p>- 지장날인 : - 자필서명 : </p> <p style="text-align: center;">고양시장 귀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p> </div> </div>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_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 여부)	면적(m ²)	(계필지)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m ²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m ²	<p><삭제></p>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_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 여부)	면적(m ²)																																						
		(계필지)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m ²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m ²																																						
<p>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p>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용어와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2014. 1.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를 위한 유효기간이 연장(2015. 1. 31)됨에 따라 제13조의2를 삭제하고 제13조의3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 나. 법 제16조의2제2항의 유효기간이 연장 없이 만료(2014. 1. 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14조 및 별지 제5호 내지 제6호 서식을 삭제 함(안 14조)
- 다. 2014. 1.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를 위한 유효기간이 연장(2015. 8. 1)됨에 따라 추진 위원회 및 조합의 보조금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제15조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5조의 2를 신설함(안 제15조의2)
- 라. 2014. 1.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개정으로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를 위한 유효기간이 연장(2015. 8. 1)됨에 따라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 마. 불분명하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순위가 명확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26조제3항)
- 바. 정비기금의 재원 중에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15퍼센트’를 ‘10 퍼센트’로 변경하여 정비기금의 재원을 현실화함(안 제49조제1호)
- 사. 조합의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비기금의 용도에 포함함(안 제50조제6호)

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에서 정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안 제52조제3항)간사를 정비기금업무 과장에서 정비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킴.(안 제52조제6항)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9월 23일

고양시 규칙 제905호

고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별지 제35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의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한다.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의2(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4(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법 제8장에 따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를 “그 미납된 부분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장 제2절 종업원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세정과장 이 현 옥
	팀 장 성 명	세원관리팀장 이 종 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종 을 (8075-2240)

[별지 제14호 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구)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월	세액	납부일	결 제		
		성 명 (법인명)	주 민(법 인) 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팁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구)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증표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팀장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p> <p>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u>사업소세 과세대장</u>을 정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신 설></p>	<p>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p> <p>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주민세</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종업원분</p> <p>제9조의2(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절 종업원분</u></p> <p>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2조(보통징수) 그 미납된 부분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u>제15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u></p> <p>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p> <p>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p> <p>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p> <p><u>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u>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u></p> <p>②~④ (생략)</p>	<p><u>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u></p> <p>②~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구)										○○연도 ○○월분 (○○구)									
과 세 번 호	사업 소명	성명 (법인 인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 원 수	급여 총액	세월	산출 세액	가산 세	계	결의 일	결 재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 자	팀장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 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 사업자등록 번호
	⑤ 주소(소재지)			⑤ 주소 (소재지)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 주소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 주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⑧ 자동차번호	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본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본 분할납부 세액	⑧ 자동차번호	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분납대상
							☐ 제1기분 ☐ 제2기분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고양시장 귀하			
위임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위임자와 의 관계		위임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 번호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80g/㎡)				210mm × 297mm(일반용지 80g/㎡)			

고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공포 · 시행) 및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85호, 2014. 4.11. 공포 · 시행)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한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종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
- 나.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1조제1항)
- 다. 법령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재정적자를개선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주요골자

가. 상수도 요금표 개정(별표 1)

-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2개년에 걸친 단계별 인상
(인상율 15.06% - 2015년 9%, 2016년 6.06%)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0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수도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주교동 601번지)

○ 전 화 : 031)8075-442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상수도 요금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월분부터 적용한다

소관과		수도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수도행정과장 김 정 배
	팀 장 직위·성명	수도행정팀장 오 상 열
	담당자 성명·전화	권 혁 기 8075-4424

[별표 1]

상수도 요금표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m³/원)			
구경 (m/m)	요금 (원)	업종	사용량(m³)	요금(원)	
				2015년	2016년부터
13m/m	1,090	가정용	총 사용량 중 1 ~ 20m³까지 사용량	469	495
			21 ~ 30m³까지 사용량	556	587
			31m³ 이상 사용량	752	794
			10m³ 이하 사용 수용가	240	253
20m/m	1,470	일반용	총 사용량 중 1 ~ 100m³까지 사용량	567	598
25m/m	1,990		101 ~ 300m³까지 사용량	676	713
32m/m	3,020		301 ~ 1,000m³까지 사용량	850	897
40m/m	4,450		1,001 ~ 2,000m³까지 사용량	1,134	1,197
50m/m	11,830		2,001m³ 이상 사용량	1,275	1,346
75m/m	17,620	대중탕용	총 사용량 중 1 ~ 1,000m³까지 사용량	436	460
100m/m	50,270		1,001 ~ 1,500m³까지 사용량	589	621
150m/m	82,440		1,501 ~ 2,000m³까지 사용량	621	656
200m/m	97,190		2,001m³ 이상 사용량	665	702
250m/m	198,430				

※수도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 [단계별 사용량 * 단계별 사용요금]의 합계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신·구조물 대비표

현		개 정 안			
[별표 1]		상수도 요금표			
구경별 정액요금 구경 (mm)	요금 (원)	업종	업종별 사용요금(㎡/원)		
			사용량(㎡)	2015	2016년부터
가정용	1,090 1,470 1,990 3,020 4,450	가정용	총 사용량 중 1 ~ 20㎡까지 사용량	469	495
			21 ~ 30㎡까지 사용량	556	587
			31㎡ 이상 사용량	752	794
			10㎡ 이하 사용 수용가	240	253
			총 사용량 중 1 ~ 100㎡까지 사용량	567	598
일반용	3,020 4,450 11,830 17,620 50,270	일반용	101 ~ 300㎡까지 사용량	676	713
			301 ~ 1,000㎡까지 사용량	850	897
			1,001 ~ 2,000㎡까지 사용량	1,134	1,197
			2,001㎡ 이상 사용량	1,275	1,346
			총 사용량 중 1 ~ 1,000㎡까지 사용량	436	460
대중탕용	82,440 97,190 198,430	대중탕용	1,001 ~ 1,500㎡까지 사용량	589	621
			1,501 ~ 2,000㎡까지 사용량	621	656
			2,001㎡ 이상 사용량	665	702

※ 수도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 [단계별 사용량 * 단계별 사용요금]의 합계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별표 1]

상수도 요금표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원)	
구경 (mm)	요금 (원)	업종	사용량(㎡) 요금(원)
13m/m	1,090	가정용	총 사용량 중 처음 20㎡까지 사용량 430
20m/m	1,470		다음 10㎡까지 사용량 510
25m/m	1,990		30㎡ 초과 사용량 690
32m/m	3,020		총 사용량 중 처음 100㎡까지 사용량 520
40m/m	4,450	일반용	다음 200㎡까지 사용량 620
50m/m	11,830		다음 700㎡까지 사용량 780
75m/m	17,620		다음 1000㎡까지 사용량 1,040
100m/m	50,270		2000㎡ 초과 사용량 1,170
150m/m	82,440		대중탕용
200m/m	97,190	다음 500㎡까지 사용량 540	
250m/m	198,430	다음 500㎡까지 사용량 570	
		2000㎡ 초과 사용량 610	
가정용 중 10㎡이하 사용 수용가는 ㎡당 220원을 적용			

※ 수도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 [단계별 사용량 * 단계별 사용요금]의 합계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고양시 고시 제2014-269 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12-311호(2012.11.23.)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13-46호(2013.1.30.), 고양시 고시 제2013-149호(2013.5.13.), 고양시 고시 제2014-24호(2014.1.10) 및 고양시 고시 제2014-115호(2014.4.1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시행 중인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1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적등록 전환 및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조정과 휴식공간 확보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 준공예정일 변경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반영된 사항을 동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9. 23.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2	학교	대학 (중부대학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5-1번지 일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13-1번지 일원	265,152	감) 110	265,042	고양시 고시 제2012-311호 (2012.11.23)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 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2	중부대학교	◦ 위치(대표지번) 및 시설면적 변경 - 대표지번 : 산15-1번지 → 613-1번지 - 면적 : 265,152m ² → 265,042m ² (감 110m ²)	◦ 지적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휴식공간 확보 등에 따른 시설면적 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세부시설명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265,152	감)110	265,042	100.0	
변경	172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13-1번지 일원	교육기본시설	66,725	감)32,631	34,094	12.9	
			지원시설	16,463	증)11,046	27,509	10.4	
			부속시설	2,089	감)2,089	-	-	
			도 로	14,787	-	14,787	5.6	
			광 장	10,247	-	10,247	3.9	
			주차장	-	증)2,089	2,089	0.8	
			공 원	12,057	증)21,585	33,642	12.6	
			녹 지	142,784	감)110	142,674	53.8	

-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의 세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65,152	감)110	265,042	100.0	
교사 시설	교육 기본 시설	소 계		66,725	감)32,631	34,094	12.9	
		본부행정동 및 연구강의동A·B 용지	연구강의동A·B 용지	34,094	-	34,094	12.9	연구강의동A에 본부 행정시설 포함
		연구강의동C 용지		4,798	감)4,798	-	-	변경 공원5
		연구강의동D 용지		4,727	감)4,727	-	-	
		연구강의동E 용지		10,425	감)10,425	-	-	변경 기숙사, 체육시설용지2
		연구강의동F 용지		8,454	감)8,454	-	-	
		연구강의동G 용지		4,227	감)4,227	-	-	변경 체육시설용지3
	지원 시설	소 계		16,463	증)11,046	27,509	10.4	
		기숙사용지		7,245	증)978	8,223	3.1	위치변경
		체육시설용지1		4,403	-	4,403	1.7	
		체육시설용지2		-	증)10,656	10,656	4.0	기정 연구강의동 E·F
		체육시설용지3		-	증)4,227	4,227	1.6	기정 연구강의동G
		실습장용지		4,815	감)4,815	-	-	변경 공원4
	부속 시설	홍보관 및 교육관 용지		2,089	감)2,089	-	-	변경 주차장
기타 시설	도 로			14,787	-	14,787	5.6	
	광 장			10,247	-	10,247	3.9	
	주차장			-	증)2,089	2,089	0.8	기정 홍보관 및 교육관
	공원	소 계		12,057	증)21,585	33,642	12.6	
		공 원1		5,268	-	5,268	2.0	
		공 원2		2,423	-	2,423	0.9	
		공 원3		4,366	-	4,366	1.6	
		공 원4		-	증)4,815	4,815	1.8	기정 실습장
		공 원5		-	증)16,770	16,770	6.3	기정 기숙사, 연구강의동C·D
	녹 지			142,784	감)110	142,674	53.8	

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학교명	세부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 부 대학교	교육 기본 시설	본부행정동 및 연구강의동A·B 용지	◦ 시설명 변경 - 본부행정동 및 연구강의동 A·B용지 → 연구강의동 A·B용지	◦ 본부행정동 폐지(관련시설 연구강의동 A에 설치)로 세부시설명 변경
		연구강의동 C용지	◦ 폐지 - 면적 : 4,798㎡	◦ 학생들의 여가, 휴식공간 조성 및 지 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 신설에 따른 폐지
		연구강의동 D용지	◦ 폐지 - 면적 : 4,727㎡	◦ 학생들의 여가, 휴식공간 조성 및 지 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 신설에 따른 폐지
		연구강의동 E용지	◦ 폐지 - 면적 : 10,425㎡	◦ 기숙사 위치변경 변경에 따른 폐지
		연구강의동 F용지	◦ 폐지 - 면적 : 8,454㎡	◦ 학생들의 여가, 휴식공간 조성 및 지 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 신설에 따른 폐지
		연구강의동 G용지	◦ 폐지 - 면적 : 4,227㎡	◦ 학생들의 여가, 휴식공간 조성 및 지 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 신설에 따른 폐지
	지원 시설	기숙사용지	◦ 위치 및 면적 변경 - 면적 7,245㎡→8,223㎡ (감 978㎡)	◦ 기숙사는 송전탑과 최대 이격배치 및 정온한 기숙환경 도모와 정주여건 독 립성 확보를 위한 위치 및 면적 변경
		체육시설 용지2	◦ 신설 - 면적 : 10,656㎡	◦ 학생들의 체력증진, 여가공간 조성 및 대규모 행사를 위한 체육시설용지 신설
		체육시설 용지3	◦ 신설 - 면적 : 4,227㎡	◦ 학생들의 체력증진,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용지 신설
		실습장 용지	◦ 폐지 - 면적 : 4,815㎡	◦ 체육시설2에 부족한 쉼터, 휴게시설 확충 및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원 신설 에 따른 폐지
	부속시 설	홍보관 및 교육관용지	◦ 폐지 - 면적 : 2,089㎡	◦ 이용자의 주차편의성 제공을 위한 주차장 신설에 따른 폐지
	주차장		◦ 신설 - 면적 : 2,089㎡	◦ 이용자의 주차편의성 제공을 위한 주차장 신설
	공원	공원4	◦ 신설 - 면적 : 4,815㎡	◦ 체육시설2에 부족한 쉼터, 휴게시설 확충 및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원 신설
		공원5	◦ 신설 - 면적 : 16,770㎡	◦ 학생들의 여가, 휴식공간 조성 및 지 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 신설
	녹지		◦ 면적변경 - 142,784㎡→142,674㎡ (감 110㎡)	◦ 등록전환, 지적분할 및 일부필지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지번변경)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13-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명칭변경)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명칭: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조성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부지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당초	학교	대학교	덕양구 대자동 산15-1번지 일원	265,152	고양캠퍼스
변경	학교	대학교	덕양구 대자동 613-1번지 일원	265,042	

- 토지이용계획

구 분	세부시설명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	265,152	265,042	100.0	
	교육기본시설	66,725	34,094	12.9	
	지원시설	16,463	27,509	10.4	
	부속시설	2,089	-	-	
	도 로	14,787	14,787	5.6	
	광 장	10,247	10,247	3.9	
	주차장	-	2,089	0.8	
	공 원	12,057	33,642	12.6	
	녹 지	142,784	142,674	53.8	

※ (1단계: 86,249m²→70,436m², 2단계:178,903m²→194,606m²)

- 건축계획

시설명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계	27,389.140	11,161.367	198,897.503	69,515.802	감소
A동(연구강의동)	4,924.357	4,924.357	40,004.652	30,477.854	
본부행정동	3,300.000	-	19,800.000	-	
B동(연구강의동)	4,488.700	4,488.700	28,678.680	28,678.680	
기숙사	2,478.083	1,748.310	22,274.171	10,359.268	
C동(연구강의동)	1,539.000	-	16,135.000	-	
D동(연구강의동)	1,539.000	-	17,285.000	-	
E동(연구강의동)	3,900.000	-	23,400.000	-	
F동(연구강의동)	3,100.000	-	18,600.000	-	
G동(연구강의동)	1,500.000	-	9,000.000	-	
홍보관및교육관	620.000	-	3,720.000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1단계) 실시계획인가일~2015. 2. 28, 2단계) 실시계획인가일 ~ 2016. 12. 31
- 변경: 1단계) 실시계획인가일~2015. 2. 28, 2단계) 실시계획인가일 ~ 2015. 08.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별첨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참조”(변경)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있음

- 무상 귀속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공공시설물 및 토지 총괄(국가)
국토교통부

시설의 구분	면적 (㎡)	비 고
계	549	
천	549	

- 시행할 자: 학교법인 중부학원
- 시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학교법인 중부학원
- 소관청별 토지조서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인	주소	종류	
1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1214	천	225,643	312	국토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 청사	-	-	-	당초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1283	천	296	296	국토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 청사				변경
2	-	-	-	-	-	-	-	-	-	-	당초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1284	천	253	253	국토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 청사				변경
계				225,643	312						당초
				549	549						변경

※ 지적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 및 면적변경

3)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합 계					265,152							당초
					265,042							변경
1	대자동	610-1	전	3,256	928	김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83	100%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수용제결 (공탁)	당초
	대자동	610-1	전	2,335	7	김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83	100%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지상권	변경
	대자동	610-5	전	921	921	김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83	100%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지상권	
2	대자동	610-3	전	346	346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변경없음
3	대자동	610-4	전	336	195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당초
	대자동	610-6	전	194	194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변경
	대자동	610-4	전	142	142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4	대자동	613	답	1,653	1,653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변경없음
5	대자동	614	대	488	488	김형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42 삼성청담아파트 101동405호	100%				당초
	제 척											변경
6	대자동	667	답	384	384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변경없음
7	대자동	산15-1	임	412,184	260,416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5,052,064, 080/5,103, 957,600				당초
						김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 1501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4,304,560 /5,103,957, 600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수용제결 (공탁)	
									연안김씨 호간공파중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68 (신림동, 연안빌딩)	가처분	
	김정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2, 904동 204호(부림동, 주공아파트)	27,588,960 /5,103,957, 600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수용제결 (공탁)						
	대자동	613-1	임	257,624	257,624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5,052,064, 080/5,103, 957,600				변경
						김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 1501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420	연안김씨 호간공파중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68 (신림동, 연안빌딩)	가처분	
	대자동	613-9	임	1,152	1,152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5,052,064, 080/5,103, 957,600				
						김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 1501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420	연안김씨 호간공파중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68 (신림동, 연안빌딩)	가처분	
김정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2, 904동 204호(부림동, 주공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	대자동	산15-57	임	171	171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5,052,064, 080/5,103, 957,600				당초
						김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 1501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4,304,560 /5,103,957, 600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수용재결 (공탁)	
						김정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2, 904동 204호(부림동, 주공아파트)	27,588,960 /5,103,957, 600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수용재결 (공탁)	
	대자동	613-3	임	171	171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5,052,064, 080/5,103, 957,600				변경
						김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 1501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420				
						김정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2, 904동 204호(부림동, 주공아파트)	4/740				
9	대자동	산15-58	임	259	259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5,052,064, 080/5,103, 957,600				당초
						김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 1501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4,304,560 /5,103,957, 600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수용재결 (공탁)	
						김정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2, 904동 204호(부림동, 주공아파트)	27,588,960 /5,103,957, 600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수용재결 (공탁)	
	대자동	613-4	임	259	259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5,052,064, 080/5,103, 957,600				변경
						김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 1501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420				
						김정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2, 904동 204호(부림동, 주공아파트)	4/740				
10	대자동	1214	천	225,643	312	국토부	경기도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100%				당초
	대자동	1283	천	296	296	국토부	경기도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100%				변경
11	대자동	1284	천	253	253	국토부	경기도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100%				신규
12	대자동	613-10	임	78,464	1,640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5,052,064, 080/5,103, 957,600				신규
						김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305동 1501호(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2/420				
						김정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2, 904동 204호(부림동, 주공아파트)	4/740				

고양시 고시 제2014-27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13-86호(2013.3.15.)로 결정(변경)된 덕양구 성사동 272-4번지 ~ 용두동 1-4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2-12호선) 및 덕양구 동산동 320번지 ~ 화전동 561-7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1-4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 9. 23.

고양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2	30 ~ 43.7	주간 선도 로	5,625	광장44 성사동 272-4	용두동 1-44	일반 도로	-	경기도 고시 제1991-280호 (1991.07.19)	사면포함 폭원 (30~89m)
변경	대로	2	12	30 ~ 42.25	주간 선도 로	5,625	광장44 성사동 272-4	용두동 1-44	일반 도로	-		사면포함 폭원 (30~89m)
기정	중로	1	48	18 ~ 40.8	보조 간선 도로	4,728	대로1-8 동산동 320	대로1-9 화전동 561-70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1996-17호 (1996.05.13)	사면포함 폭원 (18~43.7m)
변경	중로	1	48	18 ~ 40.8	보조 간선 도로	4,728	대로1-8 동산동 320	대로1-9 화전동 561-70	일반 도로	-		사면포함 폭원 (18~43.7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12호선	대로 2-12호선	○ 4 → 6~8차로 도로 폭원 확대구간 횡단구성 변경에 의한 폭원축소와 면 적변경 - 시점, 종점, 도로중심선 변경 없음 - 폭원 : 30~43.7m → 30~42.25m (사면포함 폭원 : 30~89m)	○ 8차로 구간 폭원40.4m → 39.0m로 변경과 민원에 의한 홍릉천 교량형 식과 수로이설 변경으로 인한 전체 편입면적 변경
중로 1-48호선	중로 1-48호선	○ 가·감속차로 설치로 도로 폭원 확대 - 폭원 : 18~40.8m → 18~40.8m (사면포함 폭원 : 18~43.7m)	○ 대로2-12호선의 4 → 8차로 도로 폭원 변경

☐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고양시 고시 제2014-2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2호선외 1개노선(서오릉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13-153호(2013. 5. 16.)로 실시계획고시 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12호선외 1개노선(서오릉로)】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절차 및 같은법 92조 규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23.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2	12	30 ~43.7	주 간 선 도 로	5,625	광장44 성사동 272-4	용두동 1-44	사면포함 폭원 B=30'89
변경	대로	2	12	30 ~42.25	주 간 선 도 로	5,625	광장44 성사동 272-4	용두동 1-44	사면포함 폭원 B=30'89
금회 시행	대로	2	12	30 ~43.7	주 간 선 도 로	3,155	광장44 성사동 272-4	용두동 1-44	사면포함 폭원 B=30'89
결정	중로	1	48	18 ~40.8	보조간선도 로	4,728	대로1-8 동산동 320	대로1-9 화전동 561-70	사면포함 폭원 B=18'437
변경	중로	1	48	18 ~40.8	보조간선도 로	4,728	대로1-8 동산동 320	대로1-9 화전동 561-70	사면포함 폭원 B=18'437
금회 시행	중로	1	48	18 ~40.8	보조간선도 로	280	대로1-8 동산동 320	대로1-9 화전동 561-70	사면포함 폭원 B=18'437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일 ~ 201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일 ~ 2017. 4.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조서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같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서 : “계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	당초	고양시 용두동	928	천	45,480.00	130	건설부	국				
	변경	고양시 용두동	928-3	천	92	92	건설부	국				
2	당초	“										
	변경	“	928-2	천	38	38	건설부	국				
3	당초	“	573-2	답	2,314	10	김하운	서울서초구잠원동66반포한양아파트 2-305				
	변경	“	573-12	답	10	10	김하운	서울서초구잠원동66반포한양아파트 2-305				
4	당초	“	573-4	전	1,626	331	선병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37-2	1.근저당권(채무자:김연숙), 2.지상권설정	중소기업은행(홍은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변경	“	573-13	전	295	295	선병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37-2	1.근저당권(채무자:김연숙), 2.지상권설정	중소기업은행(홍은동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5	당초	“	564-1	도	16,888	16,627	경기도	국				
	변경	“	564-4	도	16,454	16,454	경기도	국				
6	당초	“	572-1	답	861	142	원동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35번길 12(8두동)	구분지상권	한국전파기 지국주식회 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49-4 순창빌딩 5층	
	변경	“	572-5	답	112	112	고양시	국				
7	당초	“										
	변경	“	572-6	답	11	11	고양시	국				
8	당초	“	572-2	전	26	26	원동표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266				
	변경	“	572-2	전		26	고양시	국				
9	당초	“	573-1	답	5,099	124	원동표	덕양구 용두동 276	1.근저당권 2.근저당권 3.근저당권 4.지상권	신도농업협 동조합(용두지점)	덕양구 삼송동 26-8	
	변경	“	573-11	답	147	147	고양시	국				
10	당초	“	571-1	답	1,265	99	이정희	서울시은평구 역촌동12-24 덕수그린빌라 103				
	변경	“	571-6	답	90	90	고양시	국				
11	당초	“	570-5	전	452	188	윤정화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245-50				
	변경	“	570-22	전	181	181	윤정화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245-50				
12	당초	“	570-4	답	932	126	이성상	일산구마두동 794강촌아파트 804-1203				
	변경	“	570-21	답	106	106	이성상	서울 은평구 진관3로 70, 825동 702호(진관동 은평뉴타운삼림마을)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3	당초	“	570-11	답	430	49	이성상	서울 은평구 진관로 70, 825동 702호(진관동 은평뉴타운삼림마을)			
	변경	“	570-23	답	44	44	이성상	서울 은평구 진관로 70, 825동 702호(진관동 은평뉴타운삼림마을)			
14	당초	고양시 용두동	570-2	전	1,563	162	정인용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85-5	1.근저당권 2.근저당권 3.지상권	신도농업협 동조합	덕양구 삼송동 26-8
	변경	고양시 용두동	570-19	전	144	144	고양시	국			
15	당초	“	569	답	169	137	김정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10-2	1-1.근저당권 1-2.지상권 2.근저당권	1.고양동부 새마을금고 2.박복순	1.덕양구지축동 517-13 2.덕양구동산동 310-2
	변경	“	569-2	답	125	125	고양시	국			
16	당초	“	568-7	답	1,137	379	이대훈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76-15	지상권(설정할 지분1252분지 190)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	“	568-25	답	348	348	고양시	국			
17	당초	“	568-18	전	115	54		국			
	변경	“	568-30	전	28	28	고양시	국			
18	당초	“	568-29								
	변경	“	568-29	전	28	28	고양시	국			
19	당초	“	921-10	도	133	18	건설부	국			
	변경	“	921-20	도	5	5	건설부	국			
20	당초	“									
	변경	“	921-19	도	20	20	건설부	국			
21	당초	“	921-9	도	990	38	건설부	국			
	변경	“	921-18	도	48	48	건설부	국			
22	당초	“	585-2	전	2,141	54		국			
	변경	“	585-3	전	16	16	고양시	국			
23	당초	“									
	변경	“	585-4	전	46	46	고양시	국			
24	당초	“	587	답	3,355	532	이정순 (1/2) 박효경 (1/2)	서울중랑구면목로258(면목동) 서울서초구효령로67길 34,101동501호 (서초동,경남아너스빌)	1.지상권 2-1.근저당권 2-2.근저당권 2-3.근저당권	1.한국전력공사 2.동서울농업협동조합	1.서울강남구삼성동167 2.서울중랑구상봉동115-9
	변경	“	587-8	답	513	513	고양시	국			
25	당초	고양시 용두동	921-2	도	365	365	건설부	국			
	변경	고양시 용두동	921-2	도		365	건설부	국			
26	당초	“	587-1	도	6,007	6,007	경기도	국			
	변경	“	587-1	도	6,007	6,007	경기도	국			
27	당초	“	654-1	답	1,981	186	박경우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 252			
	변경	“	654-6	답	176	176	고양시	국			
28	당초	“	588-5	전	371	170	박경우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 252			
	변경	“	588-9	전	157	157	고양시	국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29	당초	“	589	전	1,249	210	권혁병	고양군 신도 읍 용두리 652-11	1.근저당권 2.지상권 3~6.근저당	신도농업협 동조합	덕양구 삼송동 26-8	
	변경	“	589-2	전	199	199	고양시	국				
30	당초	“	652-10	답	325	37	1.김태자 (1/3) 2.이경자 (1/3) 3.이신옥 (1/3)	1.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883 한양아파트이 동508호 2.서울관악구봉 천동919-14 3.서울서초구서 초동1494-4롯데 빌리지가 -101호				
	변경	“	652-52	답	43	43	이신옥	서울 서초구 서 초동 1494-4 롯데 빌리지가-101 호				
31	당초	“	652-11	전	255	190	권혁병	고양군 신도 읍 용두리 652-11				
	변경	“	652-53	전	193	193	고양시	국				
32	당초	“	652-37	전	1,173	141		국				
	변경	“	652-56	전	145	145	고양시	국				
33	당초	“	897-2	전	24,733	369	건설부	국				
	변경	“	897-19	전	446	446	건설부	국				
34	당초	“	590-25	전	294							
	변경	“	590-38	전	268	26	고양시	국				
35	당초	“	590-26	전	205	16	기획재정부	국				
	변경	“	590-39	전	35	35	고양시	국				
36	당초	“	590-7	전	53	53	건설부	국				
	변경	“	590-7	전		53	건설부	국				
37	당초	“	590-4	주	2,288	202	주식회사 선진운수	서울은평구구 산동202-12	지상권	서울씨엔지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59	
	변경	“	590-34	주	200	200	고양시	국				
38	당초	“	590-9	답	80	80	민배홍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산74-1				
	변경	“	590-9	답		80	고양시	국				
39	당초	고양시 용두동	590-17	주	307	34	주식회사 선진운수	서울은평구구 산동202-12				
	변경	고양시 용두동	590-36	주	41	41	고양시	국				
40	당초	“	623	답	1,352	325	엄명호	고양군신도읍 용두리 280-6				
	변경	“	623-2	답	291	291	엄명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80-6				
41	당초	“	590-20	도	8,202	8,202	경기도	국				
	변경	“	590-20	도		8,202	경기도	국				
42	당초	“	622-12	전	330	191	배윤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2-6				
	변경	“	622-60	대	38	38	김용환	서울특별시 마 포구 망원로 21(망원동)				
43	당초	“	622-59	대	163							
	변경	“	622-71	전	152	152	추영순	서울 마포구 망원로 21(망 원동)				
44	당초	“	622-14	답	750	66	김미심	덕양구용두동 275-12				
	변경	“	622-61	답	64	64	고양시	국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45	당초	“	622-21	답	1,292	40		경기도고양시 덕양구용두동 328	가압류	박주식	서울 종로구 송월동 77-4 송월아트빌-401	
	변경	“	622-65	답	38	38		경기도고양시 덕양구용두동 314	가압류	박주식	서울 종로구 송월동 77-4 송월아트빌-401	
46	당초	“	622-15	답	950	59		서울은평구역 촌동34-49	가압류	박주식	서울 종로구 송월동 77-4 송월아트빌-401	
	변경	“	622-62	답	54	54		서울은평구역 촌동34-49	가압류	박주식	서울 종로구 송월동 77-4 송월아트빌-401	
47	당초	“	622-17	답	497	27		서울 은평구 갈현동 522-35				
	변경	“	622-64	답	27	27		고양시 국				
48	당초	“	613-1	도	27	27		1.이봉환 (1/9) 2.이준상 (1/9) 3.이해수 (1/9) 4.이명상 (1/9) 5.이능상 (1/9) 6.이인상 (1/9) 7.이은상 (1/9) 8.이명환 (1/9) 9.이순환 (1/9)	1.연천군적성면 장현리336 2.시흥군동면시 흥리406 3.경성부임정92 번지 4.경성부주교리 24번지 5.경성부장사리 148번지 6.경성부광희정 1정목17번지 7.경성부호제동 208번지 8.경성부수식정 1번지 9.경성부임정동 214번지			
	변경	“	613-1	도		27		경기 파주시 적성면 장현 리 336				
49	당초	“	613-13	도	303	303		경기도				
	변경	“	613-13	도		303		경기도				
50	당초	“	613-12	도	9	9		경기도				
	변경	“	613-12	도		9		경기도				
51	당초	“	613-10	도	268	268		강익희			02-2647-9171	
	변경	“	613-10	도		268		강익희 (강신호)				강익 회사 망
52	당초	“	613-2	도	63	63		경기도				
	변경	“	613-2	도		63		경기도				
53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8-18	도	4	4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8-18	도		4		고양시				
54	당초	“	913-3	도	2,212	1,666		건설부				
	변경	“	913-6	도	1,717	1,717		건설부				
54-1	당초	“										
	변경	“	913-5	대	36	3		건설부				
55	당초	“	438-5	대	812	79		홍순원				
	변경	“	438-23	대	79	79		고양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56	당초	“	438-22		3							
	변경	“	438-22	도	3	홍**						
57	당초	“	438-19	도	1			국				
	변경	“	438-19	도	1	고양시		국				
58	당초	“	437-5	도	5	기획재정부		국				
	변경	“	437-5	도	5	기획재정부		국				
59	당초	“	437-3	도	3	기획재정부		국				
	변경	“	437-3	도	3	기획재정부		국				
60	당초	“	437-2	도	35	기획재정부		국				
	변경	“	437-6	도	30	기획재정부		국				
61	당초	“	436-8	도	6	기획재정부		국				
	변경	“	436-8	도	6	기획재정부		국				
62	당초	“	436-2	도	58	건설부		국				
	변경	“	436-24	도	28	건설부		국				
63	당초	“	436-22	도	26	건설부		국				
	변경	“	436-22	도	26	건설부		국				
64	당초	“	436-10	도	109	재정경제부		국				
	변경	“	436-10	도	109	재정경제부		국				
65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6-3	도	18	기획재정부		국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6-3	도	18	기획재정부		국				
66	당초	“	436-20	도	7,364			국				
	변경	“	436-20	도	24	고양시		국				
67	당초	“	436-9	답	42	경기도		국				
	변경	“	436-9	답	42	경기도		국				
68	당초	“	436-21	도	3	건설부		국				
	변경	“	436-21	도	3	건설부		국				
69	당초	“	434-28	전								
	변경	“	434-36	전		90	이점순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삼 송로 136번길 59				
70	당초	“	434-2	답	1,025	113						
	변경	“	434-2	전		113	기획재정부	국				
71	당초	“	573-10	답	299	188	건설교통부	국				
	변경	“	573-14	답	184	184	건설교통부	국				
72	당초	“	573-9	답	137	137	건설교통부	국				
	변경	“	573-9	답		137	건설교통부	국				
73	당초	“	555-5	답	1,800	41	건설교통부	국				
	변경	“	555-10	답	39	39	건설교통부	국				
74	당초	“	555-1	답	16,888	498	경기도	국				
	변경	“	555-8	답	227	227	이정일	효자동 155				
75	당초	“										
	변경	“	555-9	답	152	152	이정일	효자동 155				
76	당초	“	564	답	289	167	김하윤	서울 서초구 반 포동 241-1 반포 한양아파트 2동 305호				
	변경	“	564-2	답	179	179	김하윤	서울 서초구 반 포동 241-1 반포 한양아파트 2동 305호				
77	당초	“	571-2	답	582	139	김근용	경기도의정부 시 신곡동 351-8				
	변경	“	571-7	답	182	182	고양시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78	당초	고양시 용두동	570-3	답	205	205	박영자		일산구철문동 144-8				
	변경	고양시 용두동	570-20	답	288	288	고양시		국				
79	당초	“	567	답	4,416	50	박영자		일산구철문동 144-8				
	변경	“	567-1	답	73	73	고양시		국				
80	당초	“	570-18	답	8	8	황선모		일산읍 일산리 655-123				
	변경	“	570-18	답		8	고양시		국				
81	당초	“	570-13	답	140	101	오상기		덕양구향동동 223-2				
	변경	“	570-24	답	105	105	오상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당 산삼성래미안 410동 2102호				
82	당초	“	568-6	답	2,554	96	오상기		덕양구 향동동58-1				
	변경	“	568-22	답	60	60	오상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당 산삼성래미안 410동 2102호				
83	당초	“											
	변경	“	568-23	답	12	12	오상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당 산삼성래미안 410동 2102호				
84	당초	“	568-3	답	105	14	장태화		고양군신도읍 용두리177				
	변경	“	568-21	답	10	10	장태화		고양시 덕양 구 용두동 177				
85	당초	고양시 용두동	568-8	주	2,461	20	김철진		경기광주시 오포읍 수레실길 7, 104동1001호 (오포롯데캐슬 포레스트)	1.가등기 2.가처분 3.근저당권 4.근저당권 5.근저당권부질 권	1.이향 2-1.김태진 2-2.김동진 3.국민은행 4*5.서울특 별시개인택 시운송사업 조합	1.서울종로구평창 6길7-6(평창동) 2-1.서울성북구돈 암동한진아파트20 9-104 2-2.서울강남구도 곡동467-24우성캐 릭터오피스텔2803 호 3.서울중구남대문 로2가9-1 4*5.서울송파구신 천동11-7	
	변경	고양시 용두동	568-26	주	14	14	김철진		경기광주시 오포읍 수레실길 7, 104동1001호 (오포롯데캐슬 포레스트)	1.가등기	1.이향	1.서울종로구평창 6길7-6(평창동)7	
86	당초	“	568-12	주	661	66	김철진		경기광주시 오포읍 수레실길 7, 104동1001호 (오포롯데캐슬 포레스트)	1.가등기 2.가처분 3.근저당권 4.근저당권 5.근저당권부질 권	1.이향 2-1.김태진 2-2.김동진 3.국민은행 4*5.서울특 별시개인택 시운송사업 조합	1.서울종로구평창 6길7-6(평창동) 2-1.서울성북구돈 암동한진아파트20 9-104 2-2.서울강남구도 곡동467-24우성캐 릭터오피스텔2803 호 3.서울중구남대문 로2가9-1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4~5.서울송파구신 천동11-7	
	변경	“	568-27	주	66	김철진		경기광주시 오포읍 수래실길 7, 104동1001호 (오포롯데캐슬 포레스트)				
87	당초	“	655	전	2,338	윤태승		파주시 탄현 면 금송리 479-4	1.근저당권 2.지상권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구파발지점)	
	변경	“	655-4	전	113	윤태승		파주시 탄현 면 금송리 479-4				
88	당초	“	568-19	답	31			국				
	변경	“	568-19	답		고양시		국				
89	당초	“	655-2	전	75			국				
	변경	“	655-7	전	1	고양시		국				
90	당초	“										
	변경	“	655-6	전	47	고양시		국				
91	당초	“	921-11	도	1,634	건설부		국				
	변경	“	921-21	도	12	건설부		국				
92	당초	“										
	변경	“	921-22	도	39	건설부		국				
93	당초	“	587-6	전	2,764			국				
	변경	“	571-10	전	58	고양시		국				
94	당초	“	587-2	답	899	1.이정순 (1/2) 2.박효경 (1/2)		1.서울시중랑 구면목로285 (면목동) 2.서울시서초 구효령로67길3 4,101동501호(서초동,경남아 너스빌)	1.지상권 2~4.근저당권	1.한국전력 공사 2~4.동서울 농업협동조 합(신내지 점)	1.서울강남구삼성 동167 2~4.서울중랑구상 봉동115-9	
	변경	“	587-9	답	307	고양시		국				
95	당초	“	654-2	답	1,981	원봉연		용두동 361-109	1.가등기 2.압류 3.구분지상권 4.근저당권 5.지상권		1.덕양구성사동73 1신원당마을602-9 05 2.서울마포구독막 로311(염리동168- 9)(고양덕양지사) 3.서울강남구삼성 동167 4~5.서울은평구응 암동397-95(갈현 지점)	
	변경	“	654-7	답	163	정상덕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 동 731 신원 당마을 602-905				
96	당초	“	588-6	전	700	정상덕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성 사동 731 신원 당마을 602-905	1.근저당권 2.지상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갈현지점)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갈현지점)	
	변경	“	588-10	전	98	정상덕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성 사동 731 신원 당마을 602-905	1.근저당권 2.지상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갈현지점)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갈현지점)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97	당초	고양시 용두동	662-21	답	380	167	이수영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273			
	변경	고양시 용두동	662-55	답	152	152	이수영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273			
98	당초	“	662-3	전	163	62	이수영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273			
	변경	“	662-51	전	115	115	이수영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273			
99	당초	“	662-14	전	1,567	67	김영숙	고양군신도읍 용두리386	지상권	한국전력공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	“	662-54	전	66	66	김영숙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18	지상권	한국전력공 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00	당초	“	627	천	2,503	155		국			
	변경	“	627-2	천	160	160	고양시	국			
101	당초	“									
	변경	“	897-20	천	1	1	건설부	국			
102	당초	“	500-8	천	140	2	건설부	국			
	변경	“	500-35	천	2	2	건설부	국			
103	당초	“	500-27	천	394	67		국			
	변경	“	500-40	천	65	65	고양시	국			
104	당초	“	500-21	답	918	315	이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616-1204	근저당권	강서농업협 동조합(가 양지점)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127(방화 동)
	변경	“	500-37	답	279	279	고양시	국			
105	당초	“	624	답	478	241	유진원	서울 은평구 중산동 188-21			
	변경	“	624-2	답	212	212	고양시	국			
106	당초	“	622-32	답	951	375	박경자	서울영등포구 문래동3가94문 래동현대홈타 운101-1601	1.근저당권 2.지상권	농업협동조 합중앙회(구리도매시 장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구리도매시 장지점)
	변경	“	622-66	답	340	340	박경자	서울영등포구 문래동3가94문 래동현대홈타 운101-1601	1.근저당권 2.지상권	농업협동조 합중앙회(구리도매시 장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구리도매시 장지점)
107	당초	“	622-34	답	1,634	384	1.김동창 (1/2) 2.김창희 (1/2)	1.일산구주엽동 86강선마을1606 -1403 2.덕양구성사동 719신원당마을1 03-906			
	변경	“	622-67	답	367	367	고양시	국			
108	당초	“	622-16	답	2,306	69	정상혁	고양시 덕양 구 용두동 325-26			
	변경	“	622-63	답	62	62	고양시	국			
109	당초	고양시 용두동	622-43	답	1,946	131	원무연	고양시덕양구 용두동622-43	근저당,지상권	1~3.신도농 업협동조합 (용두지소) 4~5.신도농 업협동조합 (용두지점)	덕양구 삼송동 26-8
	변경	고양시 용두동	622-70	답	130	130	고양시	국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10	당초	고양시 용두동	622-38	답	717	140	조상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34-101	근저당권, 지상권	1~3.하나은행 (화정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변경	고양시 용두동	622-68	답	136	136	조상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34-101	근저당권, 지상권	1~3.하나은행 (화정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111	당초	“	622-40	답	1,849	114	조정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79 래미안남가좌2차아파트 103-602				
	변경	“	622-69	답	110	110	고양시		국				
112	당초	“	612-2	답	1,514	288	1.원종석 (1/4) 2.원종호 (1/4) 3.원정원 (1/4) 4.원종연 (1/4)		1.서울성북구 인촌로28길15(안암동5가) 2.서울은평구 은평터널로7가길13,2층동304호(신사동,동진빌라) 3.서울성북구 인촌로28길15-1(안암동5가) 4.서울은평구 불광로90,102동806호(불광동,대호프라자아파트)	근저당권	신도농업협동조합(용두지점)	덕양구 삼송동 26-8	
	변경	“	612-10	답	289	289	고양시		국				
113	당초	“	612-8	도	2,106	879			국				
	변경	“	612-8	도		879	고양시		국				
114	당초	“	613-4	도	27	27	강익희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24-40			010-2305-9171(아주머니)	
	변경	“	613-4	도		27	강익희 (강신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807동 806호				
115	당초	“	613-11	도	8	8	정재학		용두동314	가압류	박주식	서울 종로구 송월동 77-4 송월아트빌-401	
	변경	“	613-11	도		8	정재학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28	가압류	박주식	서울 종로구 송월동 77-4 송월아트빌-401	
116	당초	“	913-1	도	165	111	건설부		국				
	변경	“	913-4	도	111	111	건설부		국				
117	당초	“	424-33	도	470	116	건설부		국				
	변경	“	424-41	도	119	119	건설부		국				
118	당초	“	424-2	도	181	171	경기도		국				
	변경	“	424-38	도	177	177	경기도		국				
119	당초	“	424-32	도	70	19	경기도		국				
	변경	“	424-40	도	9	9	경기도		국				
120	당초	“											
	변경	“	434-32	도	61	10	경기도		국				
121	당초	“	424-34	도	78	71			국				
	변경	“	424-34	도		71	고양시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22	당초	고양시 용두동	424-25	도	500	500	서울특별시	국				
	변경	고양시 용두동	424-25	도		500	서울특별시	국				
123	당초	“	424-1	답	112	112	경기도	국				
	변경	“	424-1	답		112	경기도	국				
124	당초	“	424-31	답	707	707	경기도	국				
	변경	“	424-31	답		707	경기도	국				
125	당초	“	424-22	답	2,989	918	김병성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40-146				
	변경	“	424-30	답	904	904	김병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35-62				
126	당초	“	434-20	도	736	736	경기도	국				
	변경	“	434-20	도		723	경기도	국				
127	당초	“	434-3	답	129	102	이점순	대자동 299-16				
	변경	“	434-32	답	107	107	이점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 동 135-62				
128	당초	“	434-8	답	242	58	박정애	서울은평구불 광로170,102동6 01호(불광동,북 한산한양수자 인아파트)				
	변경	“	434-33	답	61	48	고양시	국				
129	당초	“	434-9	답	394	92	김광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59-10 브라 운스톤 구산아 파트 101-907	1~2.근저당,지상 권 3~4.근저당	1~2.우리은 행(일산지 점) 3.우리은행 (역촌동지 점) 4.우리은행 (연신내지 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변경	“	434-35	답	5	1	김광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59-10 브라 운스톤 구산아 파트 101-907	1~2.근저당,지상 권 3~4.근저당	1~2.우리은 행(일산지 점) 3.우리은행 (역촌동지 점) 4.우리은행 (연신내지 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130	당초	“										
	변경	“	434-34	답	64	15	김광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59-10 브라 운스톤 구산아 파트 101-907				
131	당초	“	433-6	도	3,631	3,631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3-6	도		3,631	서울특별시	국				
132	당초	“	433-3	답	230	72	박기태	433-3				
	변경	“	433-10	답	72	29	박기태	433-3				
133	당초	“	897	구	36,211	2049	건설부	국				
	변경	“	897	구	19,853	236	건설부	국				
134	당초	“										
	변경	“	897-17	구	2049	2,027	건설부	국				
135	당초	“										
	변경	“	897-16	구	11,999	335	건설부	국				
136	당초	“	914	도	142	2	건설부	국				
	변경	“	914	도	140	11	건설부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37	당초 변경	“ “										
138	당초 변경	“ “										
139	당초 변경	“ “										
140	당초 변경	“ “										
141	당초 변경	“ “										
142	당초 변경	“ “										
143	당초 변경	“ “										
144	당초 변경	고양시 용두동										
145	당초 변경	“ “										
146	당초 변경	“ “										
147	당초 변경	“ “										
148	당초 변경	“ “										
149	당초 변경	“ “										
150	당초 변경	“ “										
151	당초 변경	“ “										
152	당초 변경	“ “										
153	당초 변경	“ “										
154	당초 변경	“ “										
155	당초 변경	“ “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56	당초	고양시 용두동	429-2	전	780	73	안태연		미합중국위성 턴주98005벨뷰 3050-118가제 이104호				
	변경	고양시 용두동	429-17	전	74	72	안태연		미합중국위성 턴주98005벨뷰 3050-118가제 이104호				
157	당초	“	915	도	14	1	건설부		국				
	변경	“	915-3	도	1	1	건설부		국				
158	당초	“	915-2	도	57	57	건설부		국				
	변경	“	915-2	도		57	건설부		국				
159	당초	“	361-256	임	3,509	3,105							
	변경	“	361-256	임	46	46	경기도		국				
160	당초	“	432-133	도	24	24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33	도		24	서울특별시		국				
161	당초	“	432-21	전	666	39	1.합상회 (3/7) 2.정창수 (2/7) 3.정태선 (2/7)		1.덕양구용두동 432-184 2.서울은평구갈 현동547갈현1 단지아-편한세 상아파트103-6 01호 3.덕양구용두동 432-184				
	변경	“	432-408	전	38	38	고양시		국				
162	당초	“	432-336	전	4	4			국				
	변경	“	432-336	전		4	고양시		국				
163	당초	“	432-187	도	32	5	합상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184				
	변경	“	432-431	도	5	5	고양시		국				
164	당초	“	432-376	전	67	4	합상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184				
	변경	“	432-448	전	4	4	고양시		국				
165	당초	“	432-337	전	1	1							
	변경	“	432-337	전		1	고양시		국				
166	당초	“	432-188	도	46	9	가맹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432-185	1~2.근저당권 3.지상권	1~2.서서울 농업협동조합(사직지 점) 3.서서울농 업협동조합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변경	“	432-432	도	8	8	고양시		국				
167	당초	“	361-256	임	3,509		경기도		국				
	변경	“	361-336	임	3,103	3,103	경기도		국				
168	당초	“	432-198	전	544	28	가맹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432-185	1~2.근저당권 3.지상권	1~2.서서울 농업협동조합(사직지 점) 3.서서울농 업협동조합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변경	“	432-434	전	27	27	고양시		국				
169	당초	“	432-338	전	12	12	가맹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432-185	1~2.근저당권 3.지상권	1~2.서서울 농업협동조합(사직지 점) 3.서서울농 업협동조합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변경	“	432-338	전		12	고양시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면 적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70	당초	“	432-339	전	4	4	김은식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432-186			
	변경	“	432-339	전		4	김은식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432-186			
171	당초	“	432-199	전	588	18	김은식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432-186			
	변경	“	432-435	전	18	18	김은식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432-186			
171-1	당초	“									
	변경	“	432-436	전	3	3	김은식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432-186			
172	당초	“	432-191	도	26	2	김은식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432-186			
	변경	“	432-433	도	3	3	김은식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432-186			
173	당초	“	432-134	도	7	7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34	도		7	서울특별시	국			
174	당초	“	432-135	도	19	19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35	도		19	서울특별시	국			
175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2-136	도	128	128	서울특별시	국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2-136	도		128	서울특별시	국			
176	당초	“	432-137	도	230	230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37	도		230	서울특별시	국			
177	당초	“	432-319	전	96	44	1.서울용 (7/96) 2.이성상 (89/96)	1.고양시 덕양구용두동 산30-22 2.양주시장흥 면일영리27-1 푸른옥아파트 107-702			
	변경	“	432-444	전	42	42	고양시 이성상	국 서울 은평구 진관3로 708370,825동 702 호(진관동,은 평뉴타운상림 마을)			
178	당초	“	432-257	도	1,161	1,161					
	변경	“	432-257	도		1,161	서울특별시	국			
179	당초	“	432-27	전	2,254	9	김옥순	용두동 361-109	근저당,지상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홍제지점)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변경	“	432-409	전	9	9	김옥순	용두동 361-109			
180	당초	“	432-28	전	126	51	한충국	서울서대문구 갈현동 308-4			
	변경	“	432-410	전	59	59	조명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 로 586-19, 103동 703호 (녹번동, 녹 번제이알아파 트)			
181	당초	“	432-138	도	144	144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38	도		144	서울특별시	국			
182	당초	“	432-29	전	212	28	송정숙	서울특별시 은평구불광동 330-7			
	변경	“	432-411	전	32	32	고양시	국			
183	당초	“	432-139	도	101	101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39	도		101	서울특별시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84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2-329	도	10	4	김남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 동 330-7	근저당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홍제지점)	서울 은평구 용암동 397-95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2-446	도	4	4	김남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 동 330-7	근저당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홍제지점)	서울 은평구 용암동 397-95	
185	당초	“	432-298	도	50	18	이한상	고양시덕양구 용두동 432-26				
	변경	“	432-441	도	19	19	이한상	충청북도 청원 군 오송읍 오 송생명1로 152, 802동 2202호 (오송힐테스)				
186	당초	“	432-140	도	170	170	서울특별 시	국				
	변경	“	432-140	도		170	서울특별 시	국				
187	당초	“	432-308	전	46	2	이한상	고양시덕양구 용두동 432-26				
	변경	“	432-443	전	3	3	이한상	충청북도 청원 군 오송읍 오 송생명1로 152, 802동 2202호 (오송힐테스)				
188	당초	“	432-141	도	99	99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41	도		99	서울특별시	국				
189	당초	“	432-142	도	54	54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42	도		54	서울특별시	국				
190	당초	“	434-23	도	597	597	경기도	국				
	변경	“	434-23	도		597	경기도	국				
191	당초	“	434-17	답	3	3	경기도	국				
	변경	“	434-17	답		3	경기도	국				
192	당초	“	434-19	답	101	101	경기도	국				
	변경	“	434-19	답		101	경기도	국				
193	당초	“	424-24	천			경기도	국				
	변경	“	424-24	천		18	경기도	국				
194	당초	“	434-12	천	96	69	경기도	국				
	변경	“	434-12	천		69	경기도	국				
195	당초	“	425-7	답	6	4	경기도	국				
	변경	“	425-7	답	1	1	경기도	국				
196	당초	“										
	변경	“	425-13	답	5	5	경기도	국				
197	당초	“	425-1	답	1,710	284	김은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30길 12, 102동 405호(봉천동, 봉천우성아파 트)	근저당,지상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사직지점)	서울 은평구 용암동 397-95(사직지점)	
	변경	“	425-12	답	472	113	김은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30길 12, 102동 405호(봉천동, 봉천우성아파 트)	근저당,지상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사직지점)	서울 은평구 용암동 397-95(사직지점)	
198	당초	고양시 용두동	425-9	답	318	318	이봉열	서울 은평구 신사동 6-28				
	변경	고양시 용두동	425-14	답	15		이봉열	서울 은평구 신사동 6-28				
199	당초	“	425-5	답	502	502	경기도	국				
	변경	“	425-5	답		502	경기도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200	당초	“	425-4	도	85	67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25-4	도		67	서울특별시	국				
201	당초	“	914-1	도	74	1	건설부	국				
	변경	“	914-5	도	1		건설부	국				
202	당초	“	426	전	1,681	1	김완수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9-14	근저당, 지상권	신도농업협 동조합	덕양구 삼송동 26-8	
	변경	“	426-6	전	1		고양시	국				
203	당초	“	426-1	도	972	951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26-1	도		951	서울특별시	국				
204	당초	“	426-2	도	1,892	1,824	경기도	국				
	변경	“	426-2	도	76	5	경기도	국				
205	당초	“		도								
	변경	“	426-7	도	1,816	1,790	경기도	국				
206	당초	“	428-11	전	66	13	임태우	용두동361-174				
	변경	“	428-11	전	52	1	고양시	국				
207	당초	“										
	변경	“	428-14	전	14	14	고양시	국				
208	당초	“	429-10	도	566	552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29-10	도		552	서울특별시	국				
209	당초	“	428-2	전	448	84	김명순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211, 104동 202 호(대화동, 장성 마을)	1~4.근저당, 지상 권 5.근저당권	1~4.농업협동 조합중앙회(주엽지점) 5.농협은행(일산금융센 터)	1~4.서울중구충정로1 가75 5.서울중구통일로120 (충정로1가)	
	변경	“	428-2	전	363	9	고양시	국				
210	당초	“										
	변경	“	428-12	전	85	85	고양시	국				
211	당초	“	428-1	전	34	34	전태현	고양군신도읍 용두리383-4				
	변경	“	428-1	전		34	고양시	국				
212	당초	“	428-3	전	431	169	고봉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87-1				
	변경	“	428-3	전	255	2	고양시	국				
213	당초	“										
	변경	“	428-13	전	166	166	고양시	국				
214	당초	“	429-11	전	16	16	최영숙	서울 중로구 통인동 89-24				
	변경	“	429-11	전		16	최영숙	서울 중로구 통인동 89-24				
215	당초	“	914-2	도	180	8	건설부	국				
	변경	“	914-6	도	8	8	건설부	국				
216	당초	“	362-1	전	155	37	박옥희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386				
	변경	“	362-14	전	38	38	박옥희	경기 고양시 덕 양구 용두동 362-1번지				
217	당초	고양시 용두동	362-7	전	80	80	경기도	국				
	변경	고양시 용두동	362-7	전		80	경기도	국				
218	당초	“	362-10	전	431	114	1.유성열 (1/2) 2.심복자 (1/2)	화정동870은 빛마을 553-1301	근저당권	하나은행(연신내역지 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변경	“	362-15	전	118	118	고양시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219	당초	“	362-8	전	365	365	경기도	국				
	변경	“	362-8	전		365	경기도	국				
220	당초	“	362-9	전	73	73	경기도	국				
	변경	“	362-9	전		73	경기도	국				
221	당초	“	362-11	도	41	2	1.유성열 (1/2) 2.심복자 (1/2)	화정동870은 빛마을 553-1301	근저당권	하나은행(연신내역지 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변경	“	362-16	도	2	2	고양시	국				
222	당초	“	915-1	도	14	3	건설부	국				
	변경	“	915-4	도	2	2	건설부	국				
223	당초	“	361-135	구	41	6	김일관	서울중구신당 동 432-1636				
	변경	“	361-329	구	3	3	김일관	서울중구신당2 동432-1667 남 산현대빌라 302 호				
224	당초	“	361-226	구	2	2	경기도	국				
	변경	“	361-226	구		2	경기도	국				
225	당초	“	361-214	도	3,086	3,086	경기도	국				
	변경	“	361-214	도		3,086	경기도	국				
226	당초	“	361-4	전	1,653	414	박영준	일산구풍동241				
	변경	“	361-313	전	407	407	박영준	일산구풍동241				
227	당초	“	361-234	전	495	23	김일관	서울중구신당 동 432-1636				
	변경	“	361-333	전	23	23	김일관	서울중구신당2 동432-1667 남 산현대빌라 302 호				
228	당초	“	361	전	282	238	김일관	서울중구신당 동 432-1636				
	변경	“	361-312	전	262	262	김일관	서울중구신당2 동432-1667 남 산현대빌라 302 호				
229	당초	“	361-83	전	54	50	김일관	서울중구신당 동 432-1636				
	변경	“	361-83	전		54	김일관	서울중구신당2 동432-1667 남 산현대빌라 302 호				
230	당초	“	361-53	전	491	78	조동원	화전동849-22				
	변경	“	361-327	전	71	71	고양시	국				
231	당초	“	361-6	전	370	205	박종수	서울 은평구 신사동 37-32				
	변경	“	361-314	전	203	203	박종수	서울 은평구 신사동 37-32				
232	당초	고양시 용두동	361-86	전	19	19	최종진	강원도 홍천 군 홍천읍 와 동리 41				
	변경	고양시 용두동	361-86	전		19	최종진	강원도 홍천 군 홍천읍 와 동리 41				
233	당초	“	361-5	도	175	175	신도면	국				
	변경	“	361-5	도		175	신도면	국				
234	당초	“	361-58	대	93	18	신도농업 협동조합	고양시덕양구 삼송동 26-8				
	변경	“	361-328	대	18	18	고양시	국				
235	당초	“	361-189	도	107	107	경기도	국				
	변경	“	361-189	도		107	경기도	국				
236	당초	“	361-8	대	440	6	신도농업	고양시덕양구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협동조합	삼송동 26-8				
	변경	“	361-315	대	6	6	고양시	국			
237	당초	“	361-181	도	19	19	경기도	국			
	변경	“	361-181	도		19	경기도	국			
238	당초	“	361-87	도	33	33	경기도	국			
	변경	“	361-87	도		33	경기도	국			
239	당초	“	361-179	도	42	96	경기도	국			
	변경	“	361-330	도	94	94	경기도	국			
240	당초	“	361-88	도	146	92	고양군	국			
	변경	“	361-88	도		92	고양군	국			
241	당초	“	361-48	답	2,195	15	김순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24	1~3.근저당 4.지상권 5~7.근저당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변경	“	361-323	답	14	14	김순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24			
242	당초	“	361-7	도	635	180	신도면	국			
	변경	“	361-7	도		180	신도면	국			
243	당초	“	361-51	전	1,035	138	오용희	안양시동안구 관양동1415-4 덕원7차아파트 212			
	변경	“	361-326	전	136	136	오용희	안양시동안구 관양동1415-4 덕원7차아파트 212			
244	당초	“	361-22	전	258	218	안은순	덕양구 용두동325-25			
	변경	“	361-321	전	216	216	안은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04번 지 대림아파트 202동			
245	당초	“	361-45	답	2,797	13	김순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24	지상권, 근저당권	서부농업 협동조합 (갈현지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변경	“	361-322	답	13	13	김순규	서울시 은평 구 구산동 1-24	지상권, 근저당권	서부농업 협동조합 (갈현지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246	당초	“	361-20	답	760	133	김종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용두동 361-20			
	변경	“	361-320	답	131	131	고양시	국			
247	당초	“	361-17	전	694	94	윤정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433번 지 현대아파트 108동 702호			
	변경	“	361-319	전	94	94	고양시	국			
248	당초	고양시 용두동	361-19	도	4,588	4,566	경기도	국			
	변경	고양시 용두동	361-19	도		4,566	경기도	국			
249	당초	“	361-167	도	35	35	서울특별시	국			
	변경	“	361-167	도		35	서울특별시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250	당초	“	361-1	전	70	70	이세훈	서울시은평구 용암동 579-25 3층				
	변경	“	361-1	전		70	고양시	국				
251	당초	“	361-165	도	81	81	서울특별시	국				
	변경	“	361-165	도		81	서울특별시	국				
252	당초	“	361-168	도	2,213	2,213	서울특별시	국				
	변경	“	361-168	도		2,213	서울특별시	국				
253	당초	“	432-143	도	2	2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43	도		2	서울특별시	국				
254	당초	“	432-38	대	364	92	경기도	국				
	변경	“	432-412	대	98	98	경기도	국				
255	당초	“	432-226	도	288	288	경기도	국				
	변경	“	432-226	도		288	경기도	국				
256	당초	“	432-235	전	45	3	권상우	고양시덕양구 용두동 2-11				
	변경	“	432-235	전			권상우					
257	당초	“	432-331	도	12	1	기획재정부	국				
	변경	“	432-331	도			기획재정부	국				
258	당초	“	432-233	전	27	27	경기도	국				
	변경	“	432-233	전		27	경기도	국				
259	당초	“	432-147	도	108	108	기획재정부	국				
	변경	“	432-147	도		108	기획재정부	국				
260	당초	“	432-56	답	256	2	원후연	고양시덕양구 서오릉로423 (용두동)				
	변경	“	432-56	답			원종규	361-155				
261	당초	“	432-63	답	739	5	원후연	고양시덕양구 서오릉로423 (용두동)				
	변경	“	432-63	답			원종규	361-155				
262	당초	“	432-231	도	349	349	경기도	국				
	변경	“	432-231	도		349	경기도	국				
263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2-149	도	3,912	3,912	서울특별시	국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2-149	도		3,912	서울특별시	국				
264	당초	“	432-240	답	235	235	경기도	국				
	변경	“	432-240	답		235	경기도	국				
265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2-77	대	1,846	42	1.황현수 (45/100) 2.서행순 (55/100)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414 (용두동)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2-419	대	42	42	고양시	국				
266	당초	“	432-303	대	923	4	1.황현수 (45/100) 2.서행순 (55/100)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414 (용두동)				
	변경	“	432-442	대	4	4	고양시	국				
267	당초	“	432-70	도	716	716	경기도	국				
	변경	“	432-70	도		716	경기도	국				
268	당초	“	432-78	도	50	20	조승자 국(압류)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432-303	1.압류 2.근저당권	1.국(처분 청:고양세 무서) 2.부국상호 신용금고(개포지점)	1.국 2.서울강남구신사 동588-17	
	변경	“	432-420	도	19	19	조승자	432-303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269	당초	“	432-385	도	1	1	황현수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320-7			
	변경	“	432-385	도		1	고양시	국			
270	당초	“	432-76	대	330	1	황훈아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200 삼성사이 버빌리지 104-804			
	변경	“	432-76	대			황훈아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200 삼성사이 버빌리지 104-804			
271	당초	“	432-278	도	43	43	차영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헤 밀리아파트 204 동 804호			
	변경	“	432-278	도		43	차우철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헤 밀리아파트 204 동 804호			
272	당초	“	432-124	대	231	26	장구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9-1 서울시나이스강 서타워1301호			
	변경	“	432-423	대	27	27	고양시	국			
273	당초	“	983	구	8,677	1,744	국토해양부	국			
	변경	“	983-10	구	1,741	1,741	국토해양부	국			
274	당초	“	432-165	도	472	472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65	도		472	서울특별시	국			
275	당초	“	432-245	도	490	69	경기도	국			
	변경	“	432-438	도	69	69	경기도	국			
276	당초	“	432-164	도	38	38	경기도	국			
	변경	“	432-164	도		38	경기도	국			
277	당초	“	432-167	도	52	19	경기도 (고양시)	국			
	변경	“	432-428	도	19	19	경기도 (고양시)	국			
278	당초	“	산30-58	도	883	883	서울특별시	국			
	변경	“	산30-58	도		883	서울특별시	국			
279	당초	“	432-247	도	686	670	경기도	국			
	변경	“	432-440	도	153	153	경기도	국			
280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2-98	전	246	39	김문권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432-114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2-421	전	38	38	고양시	국			
281	당초	“	432-168	도	1,126	1,126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68	도		1,126	서울특별시	국			
282	당초	“	2-65	임	1,018	241	기획재정부	국			
	변경	“	2-65	임		241	기획재정부	국			
283	당초	“	432-104	도	888	238	경기도	국			
	변경	“	432-422	도	235	235	경기도	국			
284	당초	“	432-105	도	2,136	2,136	서울특별시	국			
	변경	“	432-105	도		2,136	서울특별시	국			
285	당초	“	2-62	임	181	6	경기도	국			
	변경	“	2-117	임	6	6	경기도	국			
286	당초	“	산30-55	도	8,412	8,412	서울특별시	국			
	변경	“	산30-55	도		8,412	서울특별시	국			
287	당초	“	2-59	임	336	69	경기도	국			
	변경	“	2-115	임	69	69	경기도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288	당초	“	361-16	전	970	18	이광상	서울 은평구 응암동 306-1			
	변경	“	361-318	전	18	18	이광상	서울 은평구 응 암동 306-1 모닝 빌라 203호			
289	당초	“	361-15	전	676	13	이경임 국(압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4-19	1.압류 2~3.근저당,지상 권	1.국(권리자:덕양구) 2~3.국민은 행(고양동 지점)	1.국(권리자:덕양 구) 2.서울중구남대문 로2가9-1
	변경	“	361-317	전	13	13	이경임	서울 은평구 역 촌동 228-4 로 얏3차 207호			
290	당초	“	361-229	전	1,757	85	유순금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404-3	근저당,지상권	신도농업협 동조합	덕양구 삼송동 26-8
	변경	“	361-331	전	76	76	고양시	국			
291	당초	“									
	변경	“	361-332	전	11	11	고양시	국			
292	당초	“	361-11	대	197	6	유순금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404-3			
	변경	“	361-316	대	6	6	고양시	국			
293	당초	“	432-144	대	340	196	장영옥	서울특별시은 평구녹번동 278-2 녹번2차 현대아파트 202-303호	근저당권	우리은행(응암동지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변경	“	432-425	대	189	189	장영옥	서울특별시은 평구녹번동 278-2 녹번2차 현대아파트 202-303호			
294	당초	“	432-146	전	39	39	경기도	국			
	변경	“	432-146	전		39	경기도	국			
295	당초	“	432-342	전	380	4	임경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00, 219동 1701 호(성사동, 레미 안휴레스트)	근저당권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 803호
	변경	“	432-447	전	4	4	임경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00, 219동 1701 호(성사동, 레미 안휴레스트)	근저당권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 803호
296	당초	“	432-148	도	86	86	기획재정부	국			
	변경	“	432-148	도		86	기획재정부	국			
297	당초	“	432-325	대	200	12	임경성	경기도 고양시 덕 양구 호국로 800, 219동 1701호(성사 동, 레미안휴레스 트)	근저당권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 803호
	변경	“	432-445	대	11	11	임경성	경기도 고양시 덕 양구 호국로 800, 219동 1701호(성사 동, 레미안휴레스 트)	근저당권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 803호
298	당초	“	432-41	대	330	3	임경성	경기도 고양시 덕 양구 호국로 800, 219동 1701호(성사 동, 레미안휴레스 트)	근저당권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 803호
	변경	“	432-413	대	3	3	임경성	경기도 고양시 덕 양구 호국로 800, 219동 1701호(성사 동, 레미안휴레스 트)	근저당권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 803호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 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 소	
299	당초	“	432-235	전	15	15	경기도 (고양시)	국				
	변경	“	432-235	전		15	경기도 (고양시)	국				
300	당초	“	432-61	구	286	14	기획재정부	국				
	변경	“	432-417	구	16	16	기획재정부	국				
301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2-60	답	271	39	1.홍영상 (1/6) 2.홍애경 (1/6) 3.홍애일 (1/6) 4.홍진희 (1/6) 5.홍인희 (1/6) 6.홍문환 (1/6)	1.서울특별시 초구서초동1301-6래미안서초스 위트아파트 103-2103 2.서울서초구양 재동15-12해청3 차아파트-301 3.서울동대문구 청량리동212호 릉동부아파트 104-102 4.서울서초구서 초동1348-17서 초임성빌라-202 5.서울서초구방 배동741101호 6.서울은평구구 산동217-18엘지 메코빌-101	근저당권, 지상권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영등포지 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301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2-416	답	40	40	1.홍영상 (1/6) 2.홍애경 (1/6) 3.홍애일 (1/6) 4.홍진희 (1/6) 5.홍인희 (1/6) 6.홍문환 (1/6)	1.서울특별시 초구서초동1301-6래미안서초스 위트아파트 103-2103 2.서울서초구양 재동15-12해청3 차아파트-301 3.서울동대문구 청량리동212호 릉동부아파트 104-102 4.서울서초구서 초동1348-17서 초임성빌라-202 5.서울서초구방 배동741101호 6.서울은평구구 산동217-18엘지 메코빌-101	근저당권, 지상권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영등포지 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302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2-64	전	987	22	1.홍영상 (1/6) 2.홍애경 (1/6) 3.홍애일 (1/6) 4.홍진희 (1/6) 5.홍인희 (1/6) 6.홍문환 (1/6)	1.서울특별시 초구서초동1301-6래미안서초스 위트아파트 103-2103 2.서울서초구양 재동15-12해청3 차아파트-301 3.서울동대문구 청량리동212호 릉동부아파트 104-102 4.서울서초구서 초동1348-17서 초임성빌라-202 5.서울서초구방 배동741101호 6.서울은평구구 산동217-18엘지 메코빌-101	근저당권, 지상권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영등포지 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2-418	전	22	22	1.홍영상 (1/6) 2.홍애경 (1/6) 3.홍애일 (1/6) 4.홍진희 (1/6) 5.홍인희 (1/6) 6.홍문환 (1/6)	1.서울특별시서 초구서초동1301 -6래미안서초스 위트아파트 103-2103 2.서울서초구양 재동15-12해청3 차아파트-301 3.서울동대문구 청량리동212홍 릉동부아파트 104-102 4.서울서초구서 초동1348-17서 초일성빌라-202 5.서울서초구방 배동741101호 6.서울은평구구 산동217-18엘지 데코빌-101	근저당권, 지상권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영등포지 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303	당초	“	432-155	창	200	24	원후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155				
	변경	“	432-427	창	23	23	고양시	국				
304	당초	“	432-382	답	153	16	원후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155				
	변경	“	432-449	답	15	15	고양시	국				
305	당초	“	432-151	도	1,919	1,700	경기도	국				
	변경	“	432-426	도	1,701	1,701	경기도	국				
306	당초	“	432-229	전	234	187	경기도	국				
	변경	“	432-437	전	186	186	경기도	국				
307	당초	“	432-308	임	24,538	39	한명자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도 내동 589				
	변경	“	432-450	임	34	34	한명자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도 내동 589				
308	당초	“										
	변경	“	432-451	임	5	5	한명자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도 내동 589				
309	당초	“	432-46	전	201	76	이명숙	경기도 고양 시 덕양 구용 두동 432-46				
	변경	“	432-415	전	80	80	이명숙	경기도 고양 시 덕양 구용 두동 432-46				
310	당초	고양시 용두동	432-341	임	2,636	2,361	경기도	국				
	변경	고양시 용두동	432-452	임	2,362	2,362	경기도	국				
311	당초	“	432-170	답	146	146	경기도	국				
	변경	“	432-170	답		146	경기도	국				
312	당초	“	2-60	임	574	409	경기도	국				
	변경	“	2-116	임	409	409	경기도	국				
313	당초	“	2-54	임	26,335	11	김준겸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산30-21				
	변경	“	2-114	임	11	11	김준겸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산30-21				
314	당초	“	432-173	도	1,190	1,190	경기도	국				
	변경	“	432-173	도		1,190	경기도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315	당초	“	432-174	답	114	40	경기도	국				
	변경	“	432-429	답	39	39	경기도	국				
316	당초	“	432-131	전	384	61	송충길	서울은평구갈 현동540우남 아파트101-16 02호	근저당권	김예성	서울 광진구 자양동 789 자양8차현대 홈타운아파트	
	변경	“	432-424	전	61	61	송충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1	근저당권	김예성	서울 광진구 자양동 789 자양8차현대 홈타운아파트	
317	당초	“	2-66	임	2,463	2,389	경기도	국				
	변경	“	2-111	임	2,339	2,339	경기도	국				
318	당초	“	2-36	전	27,673	403	김준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21				
	변경	“	2-107	전	403	403	고양시	국				
319	당초	“	2-63	임	2,283	1,501	경기도	국				
	변경	“	2-110	임	1,508	1,508	경기도	국				
320	당초	“	2-83	임	1,323	190	원사연	덕양구 용두동 336-1				
	변경	“	2-113	임	189	189	원사연	고양시 덕양 구 용두동 90				
321	당초	“	2-71	임	1,528	331	문화재청	국				
	변경	“	2-112	임	337	337	문화재청	국				
322	당초	“	2-55	임	1,472	360	관리청: 문화재청	국				
	변경	“	2-109	임	366	366	문화재청	국				
323	당초	“	1-61	임	21,804	76						
	변경	“	1-83	임	76	76	강순희	경기 성남시 분 당구 이매동 123 이매촌 608동 1201호				
324	당초	“	2-61	임	498	439	경기도	국				
	변경	“	2-61	임	439	439	경기도	국				
325	당초	“	산30-59	도	260	189	서울특별시	국				
	변경	“	산30-59	도	189	189	서울특별시	국				
326	당초	“	1-19	도	184	172	경기도	국				
	변경	“	1-19	도		172	경기도	국				
327	당초	고양시 용두동	1-13	잡	119,177	561	1.유병숙 (16/90) 2.현송희 (16/90) 3.현영구 (16/90)	1.서울시강남구 대치동901-46 2.과천시중양동 37주공아파트10 4동101호 3.서울강남구대 치동901-46				
	변경	고양시 용두동	1-66	잡	165	165	고양시	국				
327 -1	당초	“										
	변경	“	1-67	잡	390	390	고양시	국				
							현영구	16/30 중 1/3 서울 용산구 이 촌동 407 한가 람아파트 215동 1501호				
328	당초	“	1-28	잡	8,545	8,122	경기도	국				
	변경	“	1-75	잡	8,174	8,174	경기도	국				
329	당초	“	1-31	잡	50	12	경기도	국				
	변경	“	1-31	잡			경기도	국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330	당초	“	1-20	잡	396	2	1.유 병 숙 (16/90) 2.현 송 회 (16/90) 3.현 영 구 (16/90)		1.서울시강남구 대치동901-46 2.과천시중앙동 37주공아파트10 4동101호 3.서울강남구대 치동901-46				
	변경	“	1-20	잡			유병숙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1-46				
331	당초	“	1-42	임	5,927	92	1.신용길 (1530/6120) 2.엄정흠 (1530/6120) 3.이종봉 (1530/6120) 4.이상훈 (1030/6120) 5.예수교대한 성결교회성 일교회 (500/6120) 6.이정훈 (350/6120) 7.이혜숙 (180/6120) 8.신호범 (500/6120)		1.서울은평구갈 현동308-5 2.서울마포구상 수동35삼오맨션 402호 3.서울강남구서 초동400신동아 아파트8동307호 4.서울은평구신 사동350-25 5.서울서대문구 연화동220-3 6.서울성동구성 수동27289-21 7.서울도봉구창 동299상아파 트3동1316호 8.용두동30-38	1번지분압류(근 로복지공단,고 양세무서,서울 동대문구,국민 건강보험공단), 가압류(윤경옥: 서울강북구오패 산로30길30,103 -801(미아동,경 남아너스빌)			
	변경	“	1-42	임		92	엄정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동2가 190-15				
332	당초	“	1-44	임	8,924	6,000	경기도		국				
	변경	“	1-80	임	6,082	6,082	경기도 이종봉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성 일교회 이정훈 이혜숙 이상훈 경기도	1530/6120 1530/6120 5006120 1806120 5006120 1530/6120 1530/6120	서울강남구서초 동400신동아아파 트8동 서울서대문구연 화동220-3 서울 도봉구 미 아동 5-37 미아 아파트 13동 208 호 광주시 북구 두 암동 947-1 부영 맨션 101동 204 호 서울은평구 증 산동 163-8 대광 연립 에이동 103 호				
333	당초	“	2-45	도	2,415	478			국				
	변경	“	2-45	도		478	고양시		국				
334	당초	“	4-3	도	326	326			국				
	변경	“	4-3	도		326	고양시		국				
335	당초	“	2-43	전	574	19	진영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10	근저당권, 지상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사적지점)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변경	“	2-108	전	19	19	진영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10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적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336	당초	“	4-7	임	12,796	760	김준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21				
	변경	“	4-8	임	738	738	고양시	국				
337	당초	“	1-43	임	1,779	1,753	경기도	국				
	변경	“	1-43	임		1,779	경기도	국				
338	당초	“	1-60	임	36,105	1,061	김미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 10동 63호				
	변경	“	1-81	임	1,058	1,058	고양시	국				
339	당초	“										
	변경	“	1-82	임	2	2	고양시	국				
340	당초	“	1-45	임	1,533	1,436	경기도	국				
	변경	“	1-45	임		1,436	경기도	국				
341	당초	“	1-1	전	1,474	230	김형인	서울특별시 은평구구산동 361	근저당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갈현지점)	서울 은평구 용암동 397-95	
	변경	“	1-62	전	225	225	김형인	서울특별시 은평구구산동 361	근저당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갈현지점)	서울 은평구 용암동 397-95	
342	당초	고양시 용두동	0-10	가		202						
	변경	고양시 용두동	0-10	가		202						
343	당초	“	1-23	답	158	158	경기도	국				
	변경	“	1-23	답		158	경기도	국				
344	당초	“	2-64	임	154	120	경기도	국				
	변경	“	2-64	임		120	경기도	국				
345	당초	“	1-4	전	1,343	178	오진수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1-2	근저당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갈현지점)	서울 은평구 용암동 397-95	
	변경	“	1-63	전	175	175	오진수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1-2	근저당권	서서울농업 협동조합 (갈현지점)	서울 은평구 용암동 397-95	
346	당초	“	1-5	전	2,744	496	압류(처분 정: 서대 문세무서)	국				
	변경	“	1-64	전	499	499	압류(처분 정: 서대 문세무서)	국				
347	당초	“	1-24	답	681	681	경기도	국				
	변경	“	1-24	답		681	경기도	국				
348	당초	“	1-17	답	877	146	국방부	국				
	변경	“	1-68	답	168	168	국방부	국				
349	당초	“	1-29	답	165	165	경기도	국				
	변경	“	1-29	답		165	경기도	국				
350	당초	“	1-18	답	970	141	김형애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1-2	근저당권, 지상권	신도농업 협동조합 (용두지점)	고양시 덕양구 삼 송동 26-8	
	변경	“	1-69	답	142	142	김형애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용 두동 1-2	근저당권, 지상권	신도농업 협동조합 (용두지점)	고양시 덕양구 삼 송동 26-8	
351	당초	“	1-30	답	197	197	경기도	국				
	변경	“	1-30	답		197	경기도	국				
352	당초	“	1-7	대	308	21	김형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7	근저당권	하나은행(가좌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변경	“	1-65	대	20	20	고양시	국				
353	당초	“	1-25	답	108	108	경기도	국				
	변경	“	1-25	답		108	경기도	국				

일련 번호		소 제 지		지목	지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354	당초	“	1-37	전	1,288	9	1.압류 2.압류(처 분청:고양 세무서)		1.근로복지공 단 고양지사 2.국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농업 협동조합 (사직지점)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변경	“	1-76	전	5	5	김형윤		고양시덕양구 용두동 1-9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농업 협동조합 (사직지점)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355	당초	“											
	변경	“	1-77	전	4	4	김형윤		고양시덕양구 용두동 1-9				
356	당초	“	1-26	답	266	250	경기도		국				
	변경	“	1-71	답	255	255	경기도		국				
357	당초	“	1-22	전	258	124	경기도		국				
	변경	“	1-70	전	136	136	경기도		국				
358	당초	“	609-15	도	110	110	경기도		국				
	변경	“	609-15	도	110	110	경기도		국				
359	당초	“	609-17	도	2,415	1,570			국				
	변경	“	609-17	도		1,570	고양시		국				
360	당초	“	609-14	도	67	67	정규원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432-190				
	변경	“	609-14	도		67	고양시		국				
361	당초	“	609-13	도	31	31	경기도		국				
	변경	“	609-13	도		31	경기도		국				
362	당초	“	609-9	도	109	109	심천섭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504				
	변경	“	609-9	도		109	고양시		국				
363	당초	“	609-12	도	9	9	심천섭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2-504				
	변경	“	609-12	도		9	고양시		국				
364	당초	“	613-25	임	65	65	국방부		국				
	변경	“	613-30	임		65	국방부		국				
365	당초	“	613-23	임	165	58	국방부		국				
	변경	“	613-29	임	64	64	국방부		국				
366	당초	“	613-27	도	135	73	국방부		국				
	변경	“	613-31	도	67	67	국방부		국				
367	당초	“	610-21	임	165	28	전귀남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288				
	변경	“	610-34	임	29	29	고양시		국				
368	당초	“	613-22	도	576	224	경기도		국				
	변경	“	613-28	도	223	223	경기도		국				
369	당초	“	610-23	도	404	100	경기도		국				
	변경	“	610-35	도	230	230	경기도		국				
370	당초	“	611	도	142	142	경기도		국				
	변경	“	611	도		142	국토교통부		국				
371	당초	“	610-22	도	168	21			국				
	변경	“	610-22	도		21	고양시		국				
372	당초	“	610-2	도	66	66			국				
	변경	“	610-2	도		66	고양시		국				
373	당초	“	610-4	도	89	89	원도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69				
	변경	“	610-4	도		89	원도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69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면 (m ²)	편 입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374	당초	“	610-1	도	110	110	박일원	서울 서대문 구 대조동 187-1			
	변경	“	610-1	도		110	박일원	서울 서대문 구 대조동 187-1			
375	당초	“	610-20	전	136	96	박일원	서울 서대문 구 대조동 187-1			
	변경	“	610-33	전	95	95	박일원	서울 서대문 구 대조동 187-1			
376	당초	“	610-5	도	36	36	건설부	국			
	변경	“	610-5	도		36	건설부	국			
377	당초	“	610-3	도	38	38	기획재정부	국			
	변경	“	610-3	도		38	기획재정부	국			
378	당초	“	610-19	전	51	37	기획재정부	국			
	변경	“	610-32	전	39	39	기획재정부	국			
379	당초	“	610-17	도	91	59		국			
	변경	“	610-17	도		59	고양시	국			
380	당초	“	610-10	도	795	520	건설교통부	국			
	변경	“	610-30	도	524	524	건설교통부	국			
381	당초	“	610-18	전	112	50	기획재정부	국			
	변경	“	610-31	전	53	53	기획재정부	국			
382	당초	“	610-12	도	45	45	기획재정부	국			
	변경	“	610-12	도		45	기획재정부	국			
383	당초	“	610-11	도	50	3	기획재정부	국			
	변경	“	610-11	도		3	기획재정부	국			
384	당초	“	610-8	도	162	1	기획재정부	국			
	변경	“	610-29	도	1	1	기획재정부	국			

○ 편입 물건(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저 축	소 유 자		비고
			종 류			연면적	성 명	주 소(연락처)	
1	용두동	573-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32m ²	38m ²	선병남	원흥동 437-2	당초
						34m ²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78.4m ²	31.6m ²			당초
						27.8m ²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98.7m ²	11.5m ²			당초
						8.8m ²			변경
			웬스	철재		5.0m			
			대문	철재		1.0EA			
2	용두동	572-1	수목	소나무묘목	30.0m ²	18.0m ²	원동표	용두동 266	
			양수기			1.0식			
3	용두동	570-5	수목	소나무		18.0주	성실조정		
			수목	관목		20.0주			
4	용두동	570-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60.0m ²	25.5m ²			
						20.9m ²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60.0m ²	4.0m ²			당초
						1.4m ²			변경
			작물	상추		29.5m ²			당초
5	용두동	569	작물	배추		22.3m ²			변경
						56.5m ²	김정호	동산동 310-2	당초
						51.4m ²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저 축	소 유 자		비고
			종 류			연면적	성 명	주 소(연락처)	
6	용두동	568-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72.5㎡	25.5㎡	이대훈	동산동 76	당초
						20.7㎡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00.0㎡	38.8㎡			당초
						32.2㎡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0.0㎡	51.0㎡			당초
						42.4㎡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0.0㎡	51.5㎡			당초
						45.0㎡			변경
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0.0㎡	83.7㎡			당초
						83.3㎡			변경
	용두동	58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50.0㎡	90.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5.0㎡	37.0㎡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5.0㎡	27.5㎡			당초
						25.0㎡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5.0㎡	26.2㎡			당초
						22.4㎡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75.0㎡	45.5㎡			당초
						41.8㎡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75.0㎡	42.9㎡			당초
						39.4㎡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75.0㎡	43.2㎡			당초
						40.0㎡			변경
8			작물	상추		312.8㎡			당초
						296.1㎡			변경
	용두동	654-1,588-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12.5㎡	24.6㎡	박경우	용두동 25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12.5㎡	44.5㎡			
9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12.5㎡	53.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12.5㎡	58.6㎡			
			물탱크			1.0EA			
9	용두동	589,625-11	수목	과실주		75.0주	권혁병	용두동 652-11	
10	용두동	623	작물	대파		54.0㎡	엄명호	용두동 280-6	
			작물	들깨		80.0㎡			
			작물	열무		134.0㎡			당초
						96.0㎡			변경
11	용두동	622-12	화강석	화강암		24.0EA	배윤근	성사동 402-6	
12	용두동	622-1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82.8㎡	23.0㎡	고양 꽃원예자재		당초
						22.0㎡			변경
13	용두동	622-1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62.8㎡	11.4㎡	OK실내외조경		당초
						10.7㎡			변경
14	용두동	434-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44.0㎡	1.0㎡	행복한꽃집		당초
						3.0㎡			변경
15	용두동	434-2,3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0.0㎡	12.6㎡	한피화랑		
16	용두동	565-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90.3㎡	30.9㎡			당초
						57.0㎡			변경
17	용두동	56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48.4㎡	82.3㎡			당초
						87.0㎡			변경
			냉방시설	에어컨		1.0식			
18	용두동	568-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4.0㎡	7.1㎡			당초
						4.2㎡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34.0㎡	41.4㎡			당초
						36.6㎡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07.0㎡	44.5㎡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지 축	소 유 자		비고
			종 류			연면적	성 명	주 소(연락처)	
						39.6㎡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92.0㎡	54.3㎡			당초
						49.4㎡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80.0㎡	70.1㎡			당초
						65.7㎡			변경
			작물	상추		217.4㎡			당초
						195.5㎡			변경
19	용두동	568-8	간판	철제		1.0EA	김철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33 청실아파트 15-501	
			간판	철제		1.0EA			
			콘테이너	철제	12.0㎡	12.0㎡			
			담장	콘크리트		12.0m			
			웬스	철제		15.1m			당초
						14.2m			변경
			웬스	철제		4.5m			
			화단	벽돌	262.3㎡	262.3㎡			
			등기구	조명등		3.0EA			
20	용두동	587-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6.0㎡	85.7㎡			당초
						86.1㎡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4.0㎡	52.6㎡			당초
						54.7㎡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2.5㎡	49.3㎡			당초
						58.8㎡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06.0㎡	49.8㎡			당초
						66.0㎡			변경
			작물	상추		237.4㎡			당초
						265.5㎡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지 축	소 유 자		비고
			종 류			연면적	성 명	주 소(연락처)	
21	용두동	654-2, 588-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2.0㎡	32.0㎡			당초
						20.6㎡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2.0㎡	35.7㎡			당초
						22.9㎡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2.0㎡	31.7㎡			당초
						20.9㎡			변경
			작물	상추		99.4㎡			당초
						64.4㎡			변경
22	용두동	652-2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00.0㎡	2.3㎡	동원농자 재		당초
						0㎡			변경
			간판	철제		1.0EA			당초
						0EA			변경
23	용두동	652-1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08.0㎡	63.0㎡			
			작물	상추		125.0㎡			
24	용두동	590-21 62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98.0㎡	82.0㎡			
						73.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98.0㎡	58.0㎡			당초
						43.9㎡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7.5㎡	37.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3.0㎡	53.0㎡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63.5㎡	63.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저 축	소 유 자		비고
			종 류			연면적	성 명	주 소(연락처)	
			건물	조립식	72.0㎡	72.0㎡			당초
						65.6㎡			변경
			수목	소나무묘목		30.0주			
25	용두동	622-34,43	수목	소나무		16.0주	영림조경		
			수목	소나무		52.0주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0.0㎡	13.5㎡			당초
						10.6㎡			변경
			통신장비			1.0식	이동통신 회사		
26	용두동	622-38, 612-2	웬스	철제		36.0m	연희조경		
			수목	소나무		9.0주			
			수목	소나무		17.0주			
			조경석			4.0EA			
			수목	단풍나무		5.0주			
27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9㎡	92.5㎡	중앙꽃 도매상가		
			간판	철제		1.0EA			
28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9㎡	76.2㎡			
29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9㎡	72.0㎡	석전		
30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9㎡	69.7㎡	옛날수석 전시관		
31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9㎡	68.7㎡			
32	용두동	424-22	대문	철제		1.0EA	오대양 합판목재		
			웬스	철제		15.6m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61.5㎡	61.5㎡			
33	용두동	434-2,3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05.0㎡	17.9㎡	협공양란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3.0㎡	19.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66.0㎡	1.0㎡			
			간판	철제		1.0EA			
34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52.0㎡	김끝예 민속품		
35	용두동	434-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56.0㎡	16.4㎡	행복한꽃 집		당초
						14.5㎡			변경
36	용두동	434-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98.4㎡	14.9㎡	영선꽃예 술아카데 미		당초
						6.6㎡			변경
37	용두동	434-9	비닐하우스	철제,비닐	199.2㎡	21.0㎡	초록농원		당초
						2.8㎡			변경
38	용두동	434-9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40.7㎡	52.0㎡	카타리나		당초
						21.8㎡			변경
39	용두동	433-3	간판	철제		1.0EA	다슬기불 태기해장 국		
40	용두동	430-6, 432-225	자연석	1.0x1.0x0.5		50.0EA	꽃사랑화 원		
			웬스	철제		52.0m			
41	용두동	429-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66.4㎡	52.7㎡			당초
						42.9㎡			변경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6.0㎡	19.2㎡			당초
						12.5㎡			변경
42	용두동	429-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6.0㎡	9.5㎡	선진기업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저 축	소 유 자		비고
			종 류			연면적	성 명	주 소(연락처)	
						8.8㎡			변경
			간판	철제		1.0EA			
43	용두동	429-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5.2㎡	7.8㎡	건축자재 총판		당초
						9.2㎡			변경
44	용두동	432-21	웬스	철제		25.0m	논두렁 오리농장		
			간판	철제		1.0EA			
45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51.0㎡	인테리어 블박이장		
46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50.4㎡	수석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50.2㎡			
47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50.7㎡	형제화분		
48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48.3㎡			
49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43.4㎡	동아화랑		
50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35.6㎡	영주플라 워		
51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32.6㎡	서오름수 석		
52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32.1㎡	꽃마을		
53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32.0㎡	32.1㎡	거인의정 원		
54	용두동	424-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96.0㎡	93.8㎡	지구촌 플라워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42.0㎡	33.0㎡			
55	용두동	425-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5.6㎡	60.0㎡	예정이야 기		당초
						43.1㎡			변경
56	용두동	425-6,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5.6㎡	57.9㎡	다육이 테라스		당초
						23.9㎡			변경
57	용두동	425-6,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71.2㎡	109.8㎡	은혜농원		
						13.3㎡			
58	용두동	425-6,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5.6㎡	51.8㎡	유인꽃마 울		당초
						0㎡			변경
59	용두동	425-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5.6㎡	50.2㎡	진미플라 워		당초
						0㎡			변경
60	용두동	425-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5.6㎡	45.1㎡	가연플라 워		당초
						0㎡			변경
61	용두동	425-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5.6㎡	6.3㎡	꽃사랑 플라워		당초
						0㎡			변경
62	용두동	425-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81.3㎡	1.0㎡	사론플라 워		당초
						0㎡			변경
63	용두동	428-3, 362-1, 362-10	수목	소나무		1.0주	예일조경		
			간판	철제		1.0EA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40.0㎡	27.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3.4㎡	23.9㎡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04.0㎡	28.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4.3㎡	8.9㎡			
			웬스	철제		17.7m			
			수목	소나무		30.0주			
			수목	단풍나무		12.0주			
			수목	잣나무		10.0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저 축	소 유 자		비고
			종 류			연면적	성 명	주 소(연락처)	
64	용두동	361-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64.4㎡	64.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702.0㎡	564.3㎡			
65	용두동	361, 361-83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0.0㎡	10.0㎡			
66	용두동	361-5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3.0㎡	67.3㎡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3.0㎡	64.3㎡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3.0㎡	58.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3.0㎡	53.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3.0㎡	53.9㎡			
67	용두동	361-6	작물	들깨		222.0㎡			
			웬스	철제		67.0m			
68	용두동	361-48,5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89.0㎡	51.9㎡			
			웬스	철제		32.0m			
69	용두동	361-2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39.4㎡	239.4㎡			
70	용두동	361-22	콘테이너	철제	18.0㎡	18.0㎡			
			물탱크	철제		1.0EA			
71	용두동	361-20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71.4㎡	30.4㎡	목원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71.4㎡	30.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71.4㎡	27.3㎡			
			웬스	철제		15.9m			
72	용두동	361-1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5.8㎡	36.1㎡	대명상사		
73	용두동	36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40.0㎡	19.6㎡	제천 꽃사과직 관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90.0㎡	4.4㎡			
74	용두동	361-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25.0㎡	12.1㎡	우리포 수목원		
75	용두동	361-1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17.2㎡	3.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17.2㎡	2.1㎡			
76	용두동	361-229	간판	철제		1.0m	서오릉다 슬기삼함 보		
			수목	벗나무		2.0주			
77	용두동	432-144	창고	조립식판넬	76.2㎡	39.0㎡	한우만		
			창고입구	콘크리트		12.0m			
			간판	철제		1.0EA			
			웬스	철제		6.0m			
78	용두동	361-19	간판	철제		1.0EA	솔뚜경쌔 밥		
79	용두동	432-60	웬스	철제		16.7m			
80	용두동	432-64	콘테이너	철제	46.0㎡	46.0㎡	세방냉동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67.0㎡	17.1㎡			
81	용두동	432-382	콘테이너	철제	10.7㎡	1.0㎡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8.5㎡	25.5㎡			
			수목	전나무		15.0주			
			수목	소나무		13.0주			
82	용두동	432-151	수목	앵두나무		2.0주			
			간판	철제		1.0EA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75.0㎡	75.0㎡	대곡가설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9.5㎡	19.5㎡			
83	용두동	432-15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9.0㎡	23.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5.0㎡	32.2㎡			
84	용두동	432-174, 432-13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5.0㎡	20.7㎡	화인조경		
			간판	철제		1.0㎡			
			수목	전나무		6.0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저 축	소 유 자		비고
			종 류			연면적	성 명	주 소(연락처)	
			수목	은행나무		5.0주			
			수목	소나무		67.0주			
			수목	조경수		49.0주			
86	용두동	2-6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1.0㎡	21.0㎡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0㎡	12.0㎡			
87	용두동	432-226	간판	철제		1.0EA	농고을 생선구이		
88	용두동	432-128	대문	철제		1.0EA			
			웬스	철제		21.3m			
89	용두동	432-240	조경석	0.5x0.5x0.3		24.0EA	서오릉다 슬기		
			간판	0.6x5.0		1.0EA			
			조명등			2.0EA			
90	용두동	432-77	수목	소나무		5.0주	해주시우나		
			조경석	0.5x0.3x0.3		68.0EA			
			간판	3.5x1.0		1.0EA			
			간판	2.0x1.2		1.0EA			
			조명등			5.0EA			
			수목	소나무		4.0주			
91	용두동	432-245	웬스	철제		18.5m	한국통신		
92	용두동	2-65	수목	사철나무		2.0주	농원가든		
			수목	조경수		3.0주			
			수목	은행나무		8.0주			
93	용두동	2-45	웬스	철제		55.7m	이레씨앗 자연합습 장		
			수목	조경수		4.0주			
94	용두동	4-7, 2-43	간판	철제		1.0EA	금륜사		
			간판	철제		1.0EA			
95	용두동	4-7	콘테이너	철제	16.0㎡	16.0㎡	해병대 고양시지 회		
96	용두동	2-66	간판	철제		1.0EA	서오릉 가구단지		
97	용두동	1-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3.3㎡	홍은농원		
98	용두동	1-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4.5㎡			
99	용두동	1-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4.2㎡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4.0㎡			
100	용두동	1-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4.0㎡	무지개분 재		
101	용두동	1-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4.4㎡	들꽃마당		
102	용두동	1-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5.4㎡	소풍가는 길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7.0㎡			
103	용두동	1-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8.5㎡	송학농원		
104	용두동	1-4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16.0㎡	10.0㎡	꽃밭에서		
105	용두동	1-17	간이화장실	판넬		1.0EA	수방사 현병대		
106	용두동	1-18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289.6㎡	37.9㎡			
107	용두동	1-30	콘테이너	철제	8.0㎡	8.0㎡	제일주방		
108	용두동	1-26	간판	철제		1.0EA	열두마당		
			간판	철제		1.0EA			
			간판	철제		4.0EA			
			수목	소나무		12.0주			
			수목	전나무		10.0주			
			수목	버드나무		7.0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저 축	소 유 자		비고
			종 류			연면적	성 명	주 소(연락처)	
109	용두동	1-28	간판	철제		1.0EA	장작구이		
			간판	철제		1.0EA			
110	용두동	1-28	간판	철제		1.0EA	착한낙지		
111	용두동	1-44	콘테이너	철제	24.0㎡	24.0㎡			
112	용두동	2-63	웬스	철제		96.0m			
			대문	철제		1.0EA			
113	용두동	2-83	통신장비			1.0식	한국통신		
114	용두동	2-6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38.5㎡	47.8㎡	경성농원		
			웬스	철제		12.0m			
			대문	철제		1.0EA			
115	용두동	산30-37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6.0㎡	41.6㎡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6.0㎡	49.5㎡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6.0㎡	56.4㎡			
116	용두동	1-13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6.0㎡	41.6㎡			
117	용두동	1-28	담장	벽돌		20.0m			
			웬스	철제		20.0m			
118	용두동	1-44	계단	화강석		8.0EA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에 도시정비과에서 신청한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8), 도시정비과(031-8075-31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	53,260.0	증)126.0	53,386.0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	변 경 사 유
변경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	53,260.0 → 53,386.0	국도39호선변 일부구간 지적불부합에 따른 선형 변경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53,260.0	증) 126.0	53,386.0	100.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260.0	증) 126.0	53,386.0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4	1,636	7,652.0	5	173	1,801.0	2	894	2,918.0	7	569	2,933.0
	변경	14	1,636	9,241.0	4	147	1,554.0	2	894	4,390.0	8	595	3,297.0
광로	기정	-	-	-	-	-	-	-	-	-	-	-	-
대로	기정	2	906	2,746.0	-	-	-	1	864	2,698.0	1	42	48.0
	변경	2	906	4,218.0	-	-	-	1	864	4,170.0	1	42	48.0
중로	기정	2	87	982.0	2	87	982.0	-	-	-	-	-	-
	변경	3	113	1,298.0	2	87	977.0	-	-	-	1	26	321.0
소로	기정	10	643	3,924.0	3	86	819.0	1	30	220.0	6	527	2,885.0
	변경	9	617	3,725.0	2	60	577.0	1	30	220.0	6	527	2,928.0

주) 1. 도로의 가각, 가감속차로, 버스베이 등을 면적에 포함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대로	2	11	30~46	간선 도로	11,160 (864)	대로3-25 성사동523-5	벽제동고양시계 벽제동산38-1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는 지구단위 구역내
변경	대로	2	11	30~46	간선 도로	11,160 (864)	대로3-25 성사동523-5	벽제동고양시계 벽제동산38-1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대로	3	33	25~28.5	보조 간선 도로	1,980 (42)	대로2-11 벽제동 133-10	고양시계 벽제동 485-3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9-34호 (99.02.27.)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중로	1	51	20	보조 간선 도로	1,010 (61)	대로2-11 벽제동 196-3	대로3-33 벽제동 485-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중로	1	69	20	집산 도로	119 (26)	대로2-11 벽제동 166-15	중로1-70 고양동 674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7호 (96.05.13.)	()는 지구단위 구역내
변경	중로	1	69	20	집산 도로	119 (26)	대로2-11 벽제동 166-15	중로1-70 고양동 674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7호 (96.05.13.)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소로	1	216	10	국지 도로	124 (26)	중로1-70 고양동644	소로덕1-216 고양동607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7호 (99.03.13.)	()는 지구단위 구역내
변경	중로	3	185	10~12	국지 도로	124 (26)	중로1-70 고양동644	소로덕1-216 고양동607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7호 (99.03.13.)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소로	덕1	217	10	국지 도로	28	대로2-11 고양동541	소로덕3-504 고양동541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7호 (99.03.13.)	
변경	소로	덕1	217	10	국지 도로	28	대로2-11 고양동541	소로덕3-504 고양동541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7호 (99.03.13.)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소로	덕1	218	10	국지 도로	32	대로2-11 고양동 621	소로3-593 고양동 629	일반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4-169호 (2014.06.13.)	
기정	소로	덕2	560	8	국지 도로	30	수변공원1 고양동444-21	소로덕3-497 고양동529	보행자 전용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소로	덕3	501	6	특수 도로	31	중로1-51 고양동525	소로덕2-560 고양동529	보행자 전용도로	-	고양시고 제17호 (99.03.13.)	
기정	소로	덕3	504	6	국지 도로	145 (30)	수변공원1 고양동514	소로덕1-217 고양동545	일반 도로	-	고양시고 제17호 (99.03.13.)	()는 지구단위 구역내
변경	소로	덕3	504	6	국지 도로	145 (30)	수변공원1 고양동514	소로덕1-217 고양동545	일반 도로	-	고양시고 제17호 (99.03.13.)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소로	덕3	588	6	국지 도로	166	중로1-70 고양동698	중로3-171 고양동739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소로	덕3	589	6	국지 도로	36	소로덕3-588 고양동711	소로덕3-590 고양동711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소로	덕3	590	6	국지 도로	101	소로3-588 고양동711	중로3-171 고양동701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소로	덕3	593	6	국지 도로	187	소로1-218 고양동629	소로1-218 벽제동629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7호 (99.03.13.)	

□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1	대로2-11	· 도로선형 변경	광역상수도 지하매설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로1-69	중로1-69	· 도로선형 변경	광역상수도 지하매설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1-216	중로3-185	· 도로폭원 변경 - 폭원 : 10m→10~12m	우수관로 매설지역 도로폭원 확폭
소로덕1-217	소로덕1-217	· 도로선형 및 폭원변경	광역상수도 지하매설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소로덕3-504	소로덕3-504	· 도로선형 변경 - 회차공간 추가확보 : R=12m → R=14m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의견 반영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000	-	1,000		
기정	74	노외 주차장	고양동 701번지 일원	1,000	-	1,000	고양시고시 제2001-31호 (01.04.09.)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개소	6,363.9 (4,010)	-	6,363.9 (4,010)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160	벽제2	어린이공원	고양동 729번지 일원	2,460.9 (107)	-	2,460.9 (107)	고양시고시 제2001-31호 (01.04.09.)	()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335	공원	소공원	고양동 702번지 일원	464.0	-	464.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336	공원	소공원	고양동 614번지 일원	336.0	-	336.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337	공원	소공원	고양동 557번지 일원	606.0	-	606.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1	공원	수변공원	고양동 1-5번지 일원	2,497.0	-	2,497.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중복결정 면적중 1,109㎡ 하천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개소		1,199	-	1,199		
기정	318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461번지 일원	517	-	517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319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445-1번지 일원	179	-	179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320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762번지 일원	110	-	110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321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692번지 일원	328	-	328	고양시고시 제2013-72호 (13.02.26.)	
기정	322	녹지	경관녹지	고양동 625번지 일원	65	-	65	고양시고시 제2014-169호 (14.06.13)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593 (21)	-	593 (21)		0는 지구단위 구역내
기정	28	공공공지	대로3-33호선 및 목암천변	593 (21)	-	593 (21)	고양시고시 제31호 (01.04.09.)	0는 지구단위 구역내

다.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주요 경과지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합계				2개소			15.965	-	-		
변경	15	벽제천	지방 하천	벽제동 610-10	대자동 337-2	벽제동	7.54 (0.34)	10~70	321,120 (14,119)	경기도고시 제5092호 (06.06.14.)	0는 조성사업 지구내
변경	28	목암천	소하천	벽제동 684-9	고양동 518	-	0.885	20	18,966	고양시고시 제237호 (09.09.10.)	

주) 1. 벽제천에 도로 1,322㎡, 공원 1,109㎡ 중복 결정, 공동주택용지 169㎡ 저축
2. 목암천에 도로 819㎡, 보행자도로 235㎡ 중복 결정

③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구분	도면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합계	4,444.0	-	-	4,444.0	
변경		7,056.0	-	-	7,056.0	
기정	B1-1	1,928.0	1	고양동 745번지 일원	295.0	-
			2	고양동 745번지 일원	295.0	
			3	고양동 745번지 일원	296.0	
			4	고양동 745번지 일원	296.0	
			5	고양동 712번지 일원	296.0	
			6	고양동 712번지 일원	450.0	
기정	B1-2	2,516.0	1	고양동 711번지 일원	319.0	
			2	고양동 707번지 일원	320.0	
			3	고양동 701번지 일원	320.0	
			4	고양동 701번지 일원	280.0	
			5	고양동 701번지 일원	320.0	
			6	고양동 701번지 일원	319.0	
			7	고양동 707번지 일원	319.0	
			8	고양동 711번지 일원	319.0	
신설	B1-3	856.0	1	고양동 711번지 일원	285.0	기정:근생C1-3 →변경:단독B1-3
			2	고양동 711번지 일원	285.0	
			3	고양동 711번지 일원	286.0	
신설	B1-4	1,756.0	1	고양동 625번지 일원	878.0	기정:근생C1-8 →변경:단독B1-4
			2	고양동 625번지 일원	878.0	

※ 1.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시 변경될 수 있음
2. 1필지당 1주택 건축 가능
3. 분할·합병 불가

나. 공동주택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합계	1,290.0	-	
변경		1,247.0		
기정	A1-1	1,290.0	고양동 513번지 일원	
변경		1,247.0	고양동 513번지 일원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합계	33,061.2 (30,714.0)	-	-	33,061.2 (30,714.0)	
변경		29,029.2 (26,682.0)	-	-	29,029.2 (26,682.0)	
기정	C1-1	3378.0	1	고양동 788번지 일원	958.0	
			2	고양동 789번지 일원	483.0	
			3	고양동 457번지 일원	474.0	
			4	고양동 457번지 일원	475.0	
			5	고양동 460번지 일원	279.0	
			6	고양동 461번지 일원	709.0	
기정	C1-2	887.0	1	고양동 445-1번지 일원	304.0	
			2	고양동 445-1번지 일원	283.0	
			3	고양동 445번지 일원	300.0	
기정	C1-3	856.0	1	고양동 711번지 일원	285.0	근생C1-3 →단독B1-3
			2	고양동 711번지 일원	285.0	
			3	고양동 711번지 일원	286.0	
변경	C1-3	2,494.0	1	고양동 710번지 일원	499.0	기정:근생C1-4 →변경:근생C1-3
			2	고양동 710번지 일원	499.0	
			3	고양동 710번지 일원	499.0	
			4	고양동 700번지 일원	499.0	
			5	고양동 700번지 일원	498.0	
기정	C1-4	2,494.0	1	고양동 710번지 일원	499.0	
			2	고양동 710번지 일원	499.0	
			3	고양동 710번지 일원	499.0	
			4	고양동 700번지 일원	499.0	
			5	고양동 700번지 일원	498.0	
변경	C1-4	2,096.2 (460)	1	고양동 681번지 일원	2,096.2 (460)	기정:근생C1-5 →변경:근생C1-4
기정	C1-5	2,096.2 (460)	1	고양동 681번지 일원	2,096.2 (460)	
변경	C1-5	1,038.0 (327)	1	고양동 673번지 일원	1,038.0 (327)	기정:근생C1-6 →변경:근생C1-5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C1-6	1,038.0 (327)	1	고양동 673번지 일원	1,038.0 (327)	
변경	C1-6	4,174.0	1	고양동 633번지 일원	2,040.0	기정:근생C1-7 →변경:근생C1-6
			2	고양동 626번지 일원	1,280.0	
			3	고양동 621번지 일원	427.0	
			4	고양동 621번지 일원	427.0	
기정	C1-7	4,172.0	1	고양동 633번지 일원	3,080.0	
			2	고양동 621번지 일원	641.0	
			3	고양동 621번지 일원	451.0	
변경	C1-7	1,646.0	1	고양동 633번지 일원	530.0	기정:근생C1-9 →변경:근생C1-7
			2	고양동 618번지 일원	530.0	
			3	고양동 618번지 일원	586.0	
기정	C1-8	1,756.0	1	고양동 625번지 일원	585.0	기정:근생C1-8 →변경:단독B1-4
			2	고양동 625번지 일원	585.0	
			3	고양동 625번지 일원	586.0	
변경	C1-8	1,403.0	1	고양동 611번지 일원	428.0	기정:근생C1-10 →변경:근생C1-8
			2	고양동 608번지 일원	975.0	
기정	C1-9	1,646.0	1	고양동 629번지 일원	530.0	
			2	고양동 618번지 일원	530.0	
			3	고양동 618번지 일원	586.0	
변경	C1-9	5,203.0	1	고양동 599번지 일원	291.0	기정:근생C1-11 →변경:근생C1-9
			2	고양동 599번지 일원	325.0	
			3	고양동 599번지 일원	829.0	
			4	고양동 595번지 일원	317.0	
			5	고양동 595번지 일원	400.0	
			6	고양동 591번지 일원	468.0	
			7	고양동 590번지 일원	1,418.0	
			8	고양동 591번지 일원	707.0	
			9	고양동 584번지 일원	448.0	
기정	C1-10	1,493.0	1	고양동 611번지 일원	350.0	
			2	고양동 608번지 일원	1,143.0	
변경	C1-10	1,751.0	1	고양동 574번지 일원	490.0	기정:근생C1-12 →변경:근생C1-10
			2	고양동 574번지 일원	296.0	
			3	고양동 568번지 일원	697.0	
			4	고양동 562번지 일원	268.0	

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C1-11	6,029.0	1	고양동 599번지 일원	306.0	
			2	고양동 599번지 일원	352.0	
			3	고양동 599번지 일원	1,034.0	
			4	고양동 595번지 일원	419.0	
			5	고양동 595번지 일원	523.0	
			6	고양동 591번지 일원	568.0	
			7	고양동 591번지 일원	1,601.0	
			8	고양동 591번지 일원	753.0	
			9	고양동 584번지 일원	473.0	
변경	C1-11	643.0	1	고양동 547번지 일원	643.0	기정:근생C1-13 →변경:근생C1-11
기정	C1-12	1,751.0	1	고양동 574번지 일원	490.0	
			2	고양동 574번지 일원	296.0	
			3	고양동 568번지 일원	697.0	
			4	고양동 562번지 일원	268.0	
변경	C1-12	4,316.0	1	고양동 541번지 일원	1,015.0	기정:근생C1-14 →변경:근생C1-12
			2	고양동 541번지 일원	818.0	
			3	고양동 541번지 일원	1,702.0	
			4	고양동 527번지 일원	781.0	
폐지	C1-13	643.0	1	고양동 547번지 일원	643.0	
폐지	C1-14	4,822.0	1	고양동 541번지 일원	1,053.0	
			2	고양동 541번지 일원	908.0	
			3	고양동 541번지 일원	1,950.0	
			4	고양동 527번지 일원	911.0	

- ※ 1.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시 변경될 수 있음
 2. 1필지당 1주택 건축 가능
 3. 분할·합병은 불가(단, C1-5는 토지형상을 고려하여 합병 허용)
 4. ()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라.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000.0	-	-	1,000.0	
D1	1,000.0	-	고양동 701번지 일원	1,000.0	

※ 분할·합병 불가

마. 종교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	
	2,649.0	-	-	2,649.0	
F	2,649.0	-	고양동 671번지 일원	2,649.0	

※ 분할·합병 불가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1 ~ B1-2	도면 번호와 동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 장의사, 고시원, 노래연습장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지하층 주거(주택)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 차이 15cm 이하(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경사지붕 70% 이상 확보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중로변 1m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미만, 1층 이하에 한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차량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폭 6m)만 허용(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할 경우 예외)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1 ~ B1-4	도면 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 장의사, 고시원, 노래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지하층 주거(주택)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높이	• 4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 차이 15cm 이하(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경사지붕 70% 이상 확보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1m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미만, 1층 이하에 한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차량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폭 6m)만 허용(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할 경우 예외)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1	도면 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제2조8호의 부대시설, 제2조9호의 복리시설 1. 단지형 연립주택 2. 단지형 다세대주택 3. 원룸형 주택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높이	높이	• 5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형태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1 ~ C1-14	도면 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및 단란주점,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 장의사, 고시원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른용도(근린생활시설)와 복합한 것에 한해서 최상층에 1개층만 허용】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1 ~ C1-6 : 5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 C1-7 ~ C1-14 : 6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 차이 15cm 이하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중로·대로변 1m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C1-1 ~ C1-12	도면 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및 단란주점,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복합으로 설치되는 시설), 장의사, 고시원 제외】 • 건축법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른용도(근린생활시설)와 복합한 것에 한해서 최상층에 1개층만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단, 현재 주유소 영업중인 C1-6, C1-9BL에만 허용)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1-1 ~ C1-5 : 5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 C1-6 ~ C1-12 : 6층 이하(단,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 차이 15cm 이하(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중로·대로변 1m

라.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D1	도면 번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의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6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

마. 종교용지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F1	도면번 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종교집회장,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가목의 아동관련시설중 종교집회장과 복합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F1	도면번 호와 동일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의 종교집회장,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연면적의 40% 이하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

④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⑤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결정도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8), 도시정비과(031-8075-316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고 제2014-1287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공람 공고

1. 우리 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에 환지방식으로 추진중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구)『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4. 9. 23.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
- 명칭 :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54,16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5. 12. 31

바. 공사설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6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계					78,901.0	54,165.0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3	전	1,052.0	15.0	고양시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	전	163.0	159.0	고양시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5	전	456.0	456.0	고양시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	전	173.0	171.0	고양시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1	천	11.0	11.0	경기도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	천	17.0	7.0	경기도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	천	1,737.0	1.0	경기도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천	88.0	88.0	이철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83 백현마을휴먼시아 2801-204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2	천	103.0	102.0	경기도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3	천	125.0	125.0	이대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2	46/213				
								김은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42-1 현재트윈빌 101-702	167/213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4	천	2.0	1.0	경기도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5	천	11.0	2.0	경기도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1	대	473.0	1.0	이대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2	25/473				
								김은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42-1 현재트윈빌 101-702	448/473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전	147.0	67.0	고양시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	천	121.0	3.0	고양시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8-38	도	14.0	14.0	고양시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10	천	65.0	5.0	국(건설부)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17	천	73.0	62.0	국(건설부)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18	천	61.0	61.0	국(건설부)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19	천	19.0	17.0	국(건설부)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천	673.0	668.0	국(건설부)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1	천	103.0	103.0	국(건설부)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6	천	115.0	41.0	국(건설부)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7	천	35.0	26.0	국(건설부)						
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8	천	15.0	15.0	국(국토교통부)						
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	도	326.0	272.0	국(건설부)						
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도	927.0	495.0	국(국토교통부)						
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2	도	15.0	15.0	국(국토교통부)						
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3	도	5.0	2.0	국(건설부)						
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6-8	대	114.0	4.0	국(기획재정부)						
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6-10	대	116.0	3.0	국(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5	도	253.0	253.0	국(국토교통부)						
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6	도	178.0	178.0	차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7 숲속마을 508-404	1/2				
								이은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5-10	1/2	근저당권	차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7 숲속마을 508-404	
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대	919.0	919.0	차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7 숲속마을 508-404	1/2				
								이은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5-10	1/2	근저당권	차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67 숲속마을 508-404	
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8	도	228.0	228.0	국(국토교통부)						
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9	대	45.0	45.0	고양시						
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대	269.0	269.0	윤봉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23-2(고양동)		근저당권	벽제농업협 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전	837.0	802.0	이기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에이동 2601호(서초동, 현대슈퍼빌)	1/2	근저당권 , 지상권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문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235번길 5(대자동)	1/2				
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4	도	245.0	199.0	국(국토교통부)						
4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03	구	456.0	19.0	국(건설부)						
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0	구	365.0	365.0	고양시						
4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2	대	406.0	406.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원당신용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4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3	전	364.0	364.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 지상권	원당신용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4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3-1	전	573.0	573.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 지상권	원당신용협 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4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4	구	551.0	551.00	국(건설부)						
4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5	구	33.0	33.0	국(건설부)						
4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6	천	935.0	337.0	고양시						
4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7	구	43.0	43.0	국(건설부)						
4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8	천	132.0	132.0	고양시						
5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	전	167.0	167.0	국(국방부)						
5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6	도	251.0	203.0	국(국방부)						
5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7	전	854.0	854.0	국(국방부)						
5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8	전	38.0	38.0	국(국방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5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9	천	133.0	133.0	국(국방부)						
5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0	전	212.0	212.0	국(국방부)						
5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1	도	89.0	89.0	국(국토교통부)						
5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대	496.0	496.0	전영철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266					
5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전	518.0	518.0	홍성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7길 22(연희동)					
5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4	전	31.0	31.0	국(국토교통부)						
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5	대	76.0	76.0	국(국토교통부)						
6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6	천	496.0	62.0	고양시						
6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7	도	13.0	13.0	국(국토교통부)						
6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8	천	187.0	187.0	전진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번지	1/2				
								곽명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2 한솔마을 505-1503	1/8				
								곽형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97-8 이연파레스 301	1/8				
								곽은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4 중산마을 801-705	1/8				
								곽형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 로얄팰리스 에아-703	1/8				
6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9	도	73.0	73.0	국(국토교통부)						
6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0	전	678.0	678.0	박노경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 714-1701					
6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1	전	1,903.0	1,903.0	전영철	고양군 벽제읍 벽제동 266-4					
6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2	전	6.0	6.0	국(국토교통부)						
6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3	도	15.0	15.0	한상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55 백마마을 107-403					
6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4	전	34.0	34.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 지상권	원당신용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7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7	전	682.0	679.0	대진산업 개발주식 회사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산32-20		근저당권 , 지상권	원당신용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8-12	
											근저당권	최미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8 가좌마을 307-603	
7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9	도	259.0	128.0	노태구	서울 은평구 진관동 81 은평뉴타운 우물골 251-1102					
7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전	250.0	183.0	김교선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205-5		근저당권 , 지상권	파주축산업 협동조합	파주시 금촌동 56-2(봉일천지점)	
7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7	전	427.0	318.0	박성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4-36					
7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답	820.0	670.0	김종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22-1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7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대	889.0	889.0	문성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66, 102동 410호(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		근저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위카힐지점)	
7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9	도	185.0	70.0	경기도						
7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전	382.0	382.0	고양시						
7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답	383.0	383.0	임정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1길 25-3,402호(잠원동)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외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마두역지점)	
7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전	273.0	273.0	고양시						
8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답	200.0	200.0	고양시						
8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3	답	172.0	172.0	김진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3, 105동 403호(봉천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가양중앙지점)	
8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전	654.0	654.0	최태용	서울 성동구 옥수동 428 극동아파트 2동 1402호					
8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0	주	932.0	932.0	이창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12(원흥동)		근저당권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일산마두지점)	
8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답	1,122.0	1,122.0	박선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141-43					
8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2	천	40.0	40.0	동약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8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6	전	345.0	345.0	이창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12(원흥동)		근저당권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일산마두지점)	
8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6	답	76.0	76.0	봉종필	고양시 벽제동 99					
8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8	대	15.0	15.0	봉종필	고양시 벽제동 99					
8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대	1,256.0	1,256.0	봉종필	고양시 벽제동 99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고양시지부)	
9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3	전	380.0	380.0	봉종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845번길 90(벽제동)					
9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5	대	4.0	4.0	고양시						
9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6	대	31.0	31.0	고양시						
9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구	5,364.0	388.0	국(건설부)						
9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대	989.0	989.0	하군자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44-2		근저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원당지점)	
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9	전	450.0	450.0	전주범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 81					
9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1	전	456.0	456.0	하군자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44-2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원당지점)	
9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4	천	146.0	146.0	조옥경	경성부 교북정 14번지					
9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6	천	185.0	185.0	전창환	고양군 고양면 벽제리 100					
9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8	전	886.0	886.0	전창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10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	615.0	615.0	전창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10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1	전	977.0	977.0	이춘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96					
10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5	답	1,551.0	1,551.0	우상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헤움로162-21(고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10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주	973.0	973.0	김태영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6-903					
10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9	답	2,878.0	2,878.0	김혜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20 푸른마을 201-2003		근저당권 ,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10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0	전	76.0	76.0	김태영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6-903					
10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전	1,507.0	1,507.0	김태영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6-903					
10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4	전	286.0	226.0	김태영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06-903					
10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9	도	50.0	50.0	국(국방부)						
10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41-1	임	18.0	18.0	고양시						
1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67	임	2.0	2.0	동약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1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68	도	44.0	44.0	국(국토교통부)						
1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69	답	42.0	42.0	동약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1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1	종	2,450.0	2,450.0	재단법인 천주교의 정부교구 유지재단	의정부시 의정부동 429-6					
1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답	255.0	245.0	윤희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33-12					
1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87	답	455.0	455.0	이준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96					
1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91	전	14.0	12.0	고양시						
1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92	답	322.0	322.0	이준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96					
1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98	전	458.0	458.0	동약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1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	전	305.0	305.0	윤순철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20 푸른마을 201-1903		근저당권 ,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1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전	1,666.0	1,666.0	이금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7-9	3/7				
								이근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7-9	2/7				
								이소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7-9	2/7				
1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전	1,531.0	1,531.0	윤평중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440번길 173		근저당권 ,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1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4	대	138.0	138.0	윤순철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20 푸른마을 201-1903		근저당권 ,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근저당권	박대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읍내로 25, 107동 904호(고양동, 우방유헤아파트)	
1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임	748.0	748.0	이상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6					
1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	잡	998.0	998.0	박성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4-36					
1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전	667.0	667.0	이상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26					
1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1	전	2,147.0	2,147.0	고현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나길 15,101동 409호(내발산동, 수산오성아파트)		근저당권 , 지상권	강서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강화로 127(방화동)(신월사거리지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정면적 (㎡)	면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권리구분	성명	주소	
1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2	전	1,350.0	1,350.0	박성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4-36					
1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28	전	33.0	33.0	이유순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22번길 52, 302동 805호(호원동, 호원3차우성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근저당권	최무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03(가능동)	
1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36	묘	60.0	60.0	고현창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나길 15,101동 409호(내발산동, 수산오성아파트)		근저당권	강서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강화로 127(방화동)(신월사거리지점)	
1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39	전	37.0	37.0	심정보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계동 360-2 청구아파트 106-301					
1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45	전	1,092.0	1,092.0	허옥수	경기도 구리시 코스모스길213번길 63-66(도평동)		근저당권, 지상권	벽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26-2(고양지점)	
1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62	전	111.0	111.0	주식회사 미평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127-20					
1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7	잡	891.0	227.0	국(국방부)						
1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잡	246.0	246.0	국(국방부)						
1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9	잡	145.0	145.0	국(국방부)						
1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0	잡	3,952.0	465.0	국(국방부)						
1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천	1,581.0	187.0	국(국방부)						
1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5	전	104.0	24.0	고양시						
1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3-1	도	84.0	84.0	이중배	서울 강남구 서초동 279	6/13				
								김영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8	2/13				
								이중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8	4/13				
								이혜숙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196	1/13				
140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33-25	도	90.0	4.0	고양시						
14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33-26	전	143.0	47.0	고양시						
142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33-27	전	393.0	20.0	고양시						
14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42-4	도	965.0	338.0	경기도						
144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43-4	도	36.0	36.0	봉충필	고양시 벽제읍 벽제리 99					
145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60-7	도	1,018.0	641.0	경기도						
146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61-1	도	628.0	316.0	국(국토교통부)						
147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66-15	도	360.0	256.0	경기도						
148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96-1	도	167.0	9.0	고양시						
149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96-10	도	889.0	45.0	국(국토교통부)						
150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65-1	천	7.0	7.0	경기도						
15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76	도	502.0	29.0	국(국토교통부)						
152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79-18	구	2,199.0	11.0	국(건설부)						
15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84	구	1,935.0	26.0	국(건설부)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 가옥, 수목 등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준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5	고양시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	경기도	천막		144.0 m ²	존치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	경기도	심야보일러	온수탱크포함	1 식	존치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	경기도	가차	판넬	17.0 m ²	존치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주택및 근린생활시설	벽돌조	204.0 m ²	철거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근린생활시설	벽돌조	107.0 m ²	철거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주택	블럭조스레트	38.0 m ²	철거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휴업보상	장터식당	1 식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간판		1 식	철거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	이철규	간판	마이홈	2 식	철거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고양시	컨테이너		14.0 m ²	철거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고양시	웬스		12.5 m	철거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고양시	창고	조립식	11.0 m ²	철거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점포	철재	101.0 m ²	철거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휴업보상	늘푸름	1 식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간판		3 식	철거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화장실	이동식	2 식	철거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화훼하우스		82.0 m ²	철거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천막		21.0 m ²	철거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비닐하우스		9.0 m ²	철거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국토교통부	화장실	이동식	1 식	철거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6-8	기획재정부	주택		114.0 m ²	철거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6-8	기획재정부	창고		54.0 m ²	철거	
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근린생활시설	벽돌조	218.0 m ²	철거	
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창고	판넬조	12.0 m ²	철거	
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창고	판넬조	4.0 m ²	철거	
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천막		11.0 m ²	철거	
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세차장		68.0 m ²	철거	
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세차장	천막	26.0 m ²	철거	
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세차장	천막	9.0 m ²	철거	
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차마	천막	11.0 m ²	철거	
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차마	천막	11.0 m ²	철거	
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담장		22.3 m	철거	
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진공청소기		2 식	철거	
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간판		2 식	철거	
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휴업보상	신도시오토바이	1 식		
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간판		1 식	철거	
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휴업보상	KCC페인트	1 식		
4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간판		2 식	철거	
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천막		1 식	철거	
4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휴업보상	셀프카센타	1 식		
4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간판		1 식	철거	
4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주택	블럭스레트	78.0 m ²	철거	
4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비닐하우스		34.0 m ²	철거	
4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창고		9.0 m ²	철거	
4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창고		6.0 m ²	철거	
4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회외1인	차마		19.0 m ²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4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물탱크		1 식	철거	
5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담장	판넬	27.5 m	철거	
5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화장실	조립식	5.0 m ²	철거	
5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개나리		4 주	철거	
5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목련		1 주	철거	
5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소나무		1 주	철거	
5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잣나무		1 주	철거	
5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차인희외1인	대추나무		1 주	철거	
5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근린생활시설	벽돌조	94.0 m ²	철거	
5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근린생활시설	블럭조	66.0 m ²	철거	
5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근린생활시설	블럭조	18.0 m ²	철거	
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화장실	슬라브	24.0 m ²	철거	
6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처마		3.0 m ²	철거	
6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휴업보상	MJ가구	1 식		
6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간판		3 식	철거	
6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휴업보상	덕천목공예	1 식		
6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간판		1 식	철거	
6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비닐하우스		81.0 m ²	철거	
6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휴업보상	남해공업사	1 식		
6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윤봉수	간판		2 식	철거	
6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주택	VH,목재	54.0 m ²	철거	
7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비닐하우스		36.0 m ²	철거	
7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창고	조립식	19.0 m ²	철거	
7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창고	목재	18.0 m ²	철거	
7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조립식	113.0 m ²	철거	
7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철재,컨테이너	11.0 m ²	철거	
7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블록,판넬	10.0 m ²	철거	
7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처마		5.0 m ²	철거	
7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간판		1 식	철거	
7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관정		1 식	철거	
7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복숭아나무		1 주	철거	
8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느티나무		2 주	철거	
8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단풍나무		3 주	철거	
8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과실수		1 주	철거	
8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이전비 (유보살)	1 식		
8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간판		1 식	철거	
8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42.0 m ²	철거	
8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6.0 m ²	철거	
8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창고		36.0 m ²	철거	
8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이기태외1인	법당	이전비 (제주도고보살)	1 식	철거	철거
8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2	대진산업개발주식회사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철거
9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물탱크	Con'c	42.0 m ²	철거	
9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펌프실	Con'c,1층	35.0 m ²	철거	
9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벽돌조2층	35.0 m ²	철거	
9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펌프실	블럭조	35.0 m ²	철거	
9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펌프실	블럭조	24.0 m ²	철거	
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창고	블럭조	28.0 m ²	철거	
9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창고	블럭조	12.3 m ²	철거	
9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담장	블럭조	120.0 m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9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대문	철재	1	식	철거	
9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변압기		1	식	철거	
10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급수시설 (펌프)		1	식	철거	
10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단풍나무		5	주	철거	
10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소나무		1	주	철거	
10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개나리		1	주	철거	
10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무궁화나무		3	주	철거	
10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목련		1	주	철거	
10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철쭉		5	주	철거	
10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5외	국방부	은행나무		1	주	철거	
10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주택	블록기와.	90.0	m ²	철거	전영철
10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주택	블록기와.	26.0	m ²	철거	
1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창고	조립식	14.0	m ²	철거	
1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다용도실	조립식	4.0	m ²	철거	
1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담장	블록	30.6	m	철거	
1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창고	블럭조	9.0	m ²	철거	
1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창고	스레트	6.0	m ²	철거	
1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대문	철재	1	식	철거	
1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연산홍		91	주	철거	
1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대추나무		3	주	철거	
1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머루나무		2	주	철거	
1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주목		10	주	철거	
1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함박꽃		10	주	철거	
1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할미꽃		5	주	철거	
1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단풍나무		5	주	철거	
1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앵두나무		1	주	철거	
1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소나무		2	주	철거	
1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매화나무		2	주	철거	
1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2	전영철	작약		6	주	철거	
1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매실나무		30	주	철거	
1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소나무		4	주	철거	
1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향나무		4	주	철거	
1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무궁화		1	주	철거	
1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포도나무		1	주	철거	
1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단풍나무		3	주	철거	
1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3	홍성무	뽕나무		1	주	철거	
1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41	전영철	비닐하우스		24.0	m ²	철거	
1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김교선	컨테이너		32.0	m ²	철거	
1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김교선	화장실	이동식	1	식	철거	
1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김교선	처마		3.0	m	철거	
1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0	김교선	간판		2	식	철거	
1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김종화	감나무		9	주	철거	김종화
14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김종화	매실나무		40	주	철거	
1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김종화	대추나무		9	주	철거	
14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2	김종화	기타수목		3	주	철거	
14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테크		40.0	m ²	철거	마창민
14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벤치		5	개	철거	
14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웬스		14.0	m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14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은행나무		1 주	철거	문성자
14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자두나무		1 주	철거	
14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68	문성자	간판		1 식	철거	
14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고양시	간판		1 식	철거	천주교 고양동
15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임정운	컨테이너		27.0 m²	철거	임정운
15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임정운	화장실		1 식	철거	
15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임정운	웬스		65.0 m	철거	
15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4	임정운	보도블럭		23.0 m²	철거	
15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3	김진희	컨테이너		18.0 m²	철거	윤순철
15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3	김진희	웬스		4.8 m	철거	
15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사무실	조립식	13.0 m²	철거	정만옥
15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컨테이너	주거용	12.0 m²	철거	
15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계근대	40t	1 식	철거	
15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웬스		70.0 m	철거	
1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출입문	L25M	1 식	철거	
16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관정		1 식	철거	
16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기타물품	이전비	1 식	철거	
16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간판		1 식	철거	최태용
16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최태용	은행나무		3 주	철거	
16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비닐하우스		132.0 m²	철거	김윤근
16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창고및화장실	조립식	12.0 m²	철거	
16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사과나무		1 주	철거	
16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앵두나무		6 주	철거	
16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1	박선임	복숭아나무		3 주	철거	
17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담장	블록	103.0 m	철거	원홍주 주소
17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세차장		59.0 m²	이전	
17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기름탱크		10 kl	이전	지하 매설
17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감나무		1 주	철거	
17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단풍나무		1 주	철거	
17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외	이창화	소나무		1 주	철거	
17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웬스	철재	84.0 m	철거	(주)봉 신
17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대문	철재	1 식	철거	
17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컨테이너		18.0 m²	철거	
17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물품	전선	1 식	철거	
18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벚나무		1 주	철거	
18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자두나무		1 주	철거	
18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단풍나무		1 주	철거	
18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쥐똥나무		8 m	철거	
18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향나무		1 주	철거	
18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9	봉종필	나무		2 주	철거	
18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국토교통부	컨테이너		22.0 m²	철거	
18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국토교통부	간판		1 식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18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국토교통부	웬스	판넬	6.7 m	철거	
18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슬라브	198.0 m ²	존치	
19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가건물	41.0 m ²	존치	
19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가건물	2.0 m ²	존치	
19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무벽	55.0 m ²	존치	
19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근린생활시설	무벽	25.0 m ²	존치	
19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전기탑차		9.0 m ²	존치	
1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8	하군자	간판		1.0 식	존치	
19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비닐하우스		242.0 m ²	철거	전창환
19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주택	조립식	17.0 m ²	철거	
19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가차	데크	21.0 m ²	철거	
19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창고	조립식	13.0 m ²	철거	
20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20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화장실	이동식	1 식	철거	
20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건사	철재	8.0 주	철거	
20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장미		1.0 주	철거	
20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향나무		12.0 주	철거	
20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사철나무		6.0 주	철거	
20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전창환	포도나무		2.0 주	철거	
20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주유소	슬라브	114.0 m ²	존치	
20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세차장	가건물	47.0 m ²	존치	
20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캐노피		476.0 m ²	존치	
2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담장		85.0 m	존치	
2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가로등		3.0 주	존치	
2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주유기		8.0 기	존치	
2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김태영	간판		1.0 식	존치	
2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계사	목재	12.0 m ²	철거	김태영
2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창고	목재	10.0 m ²	철거	
2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비닐하우스		13.5 m ²	철거	
2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향나무		1 주	철거	
2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느티나무		11 주	철거	
2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주목		2 주	철거	
2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소나무		3 주	철거	
2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오엽송		1 주	철거	
2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회양목		12 주	철거	
2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앵두나무		1 주	철거	
2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단풍나무		1 주	철거	
2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사철나무		5 주	철거	
2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쥐똥나무		10.0 m	철거	
2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33	김태영	담장	Con'c블럭	27.0 m	철거	
2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윤희선	웬스		116.0 m	존치	
2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윤희선	대문	철재	1 식	존치	
2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	윤순철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2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은행나무		1 주	철거	
23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단풍나무		2 주	철거	
23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소나무		4 주	철거	
23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오송		1 주	철거	
23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대추나무		3 주	철거	
23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두릅		220 주	철거	
23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0외	윤순철	연산홍		20 주	철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토지 소유자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존치 여부	비고
	시	구	동							
23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이금순외2인	비닐하우스		50.0 m ²	철거	
23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이금순외2인	매실나무		10 주	철거	
24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이금순외2인	소나무		30 주	철거	
2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창고	목재	14.0 m ²	철거	
24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컨테이너		18.0 m ²	철거	
24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컨테이너		27.0 m ²	철거	
24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연산홍		4 주	철거	
24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목련		5 주	철거	
24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오가피		2 주	철거	
24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개나리		5 주	철거	
24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2	윤평준	주목		1 주	철거	
24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비닐하우스		127.0 m ²	철거	
25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놀이시설		1 식	철거	
25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느티나무		76 주	철거	이윤제
25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살구나무		131 주	철거	
25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산수유		50 주	철거	
25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오가피		101 주	철거	
25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이상희	모과		100 주	철거	
25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	박성래	컨테이너		24.0 m ²	철거	
25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주목		421 주	철거	이윤제
25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단풍나무		12 주	철거	
25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보리수		2 주	철거	
2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느티나무		10 주	철거	
26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오가피		40 주	철거	
26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0	이상희	구기자		10 주	철거	
26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36	고현창	컨테이너		14.0 m ²	철거	
26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7	국방부	컨테이너	주거용	18.0 m ²	철거	
26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국방부	화장실		1 식	철거	
26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국방부	관정		1 식	철거	
26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국방부	밤나무		1 주	철거	
26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8	국방부	앵두나무		5 주	철거	

- 가로등

번호	소재지	지번	가로등번호	소관청	비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39호선 244		철거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0-7	확인불가		철거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39호선 236		철거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확인불가		철거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확인불가		철거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39호선 242		철거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87	확인불가		철거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87	확인불가		철거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26	39호선 230		철거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	확인불가		철거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5	고양동-202		철거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확인불가		철거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확인불가		철거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확인불가		존치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	확인불가		존치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LP-2 018		존치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LP-2 017		존치

- 맨홀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종 류	수량	비 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6	우수맨홀	1	존치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우수맨홀	1	존치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0-7	경찰맨홀	1	존치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경찰맨홀	1	존치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기타맨홀	1	존치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통신맨홀	1	존치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도시가스맨홀	1	존치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도시가스맨홀	1	존치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가로등맨홀	1	존치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우수맨홀	1	존치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우수맨홀	1	존치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국방부맨홀	1	존치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기타맨홀	1	존치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경찰맨홀	1	존치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1	우수맨홀	1	존치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통신맨홀	1	존치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오수맨홀	1	존치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오수맨홀	1	존치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통신맨홀	1	존치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경찰맨홀	1	존치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우수맨홀	1	존치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기타맨홀	1	존치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7	우수맨홀	1	존치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0	우수맨홀	1	존치

- 한전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9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9	9634Q 681 대자간 73 R16 L2	한국전력	이전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20	9634Q 672 대자간 73 R16 L1	한국전력	이전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9634Q 544 대자간 73 R12 L1	한국전력	이전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9634Q 521 대자간 73 R11	한국전력	이전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	9634Q 421 대자간 73 R10	한국전력	이전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1-1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0-7	9634Q 312 대자간 73 R9	한국전력	이전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4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9634Q 313 대자간 73 R8	한국전력	이전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9634Q 201 대자간 73 R7	한국전력	이전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9634S 293 대자간 73 R7 H1	한국전력	이전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6	9634Q 012 대자간 73 R7 L3L1	한국전력	이전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2	9634P 904 대자간 73 R7L3 L3R1	한국전력	이전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2	확인불가	한국전력	이전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9	9634 051 대자간 73 R2	한국전력	이전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1	9634S041대자간73R1	한국전력	이전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3	9634R543대자간	한국전력	존치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9634R661대자간TRP76T2	한국전력	존치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9634R622대자간SWP78	한국전력	존치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5-1	9634R474대자간85R1	한국전력	존치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9634P 501 대자간 88	한국전력	존치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9634P502대자간	한국전력	이전
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9634303대자간89	한국전력	존치
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확인불가	한국전력	존치
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5	9634P421대자간91R1	한국전력	이전
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9634P423대자간91	한국전력	존치
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19	9634P422대자간91R2	한국전력	이전
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0	확인불가	한국전력	존치

- 통신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한국통신	이전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한국통신	이전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한국통신	이전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2-4		한국통신	이전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한국통신	이전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한국통신	이전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2		한국통신	이전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28		한국통신	이전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9		한국통신	이전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9		한국통신	이전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1		한국통신	이전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31		한국통신	이전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7		한국통신	이전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		한국통신	이전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5		한국통신	이전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한국통신	이전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44-20		한국통신	이전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1		한국통신	존치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3		한국통신	존치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7		한국통신	이전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7		한국통신	이전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86		한국통신	이전

- 기타

번호	소 재 지	지 번	종 류	수량	단위	비 고
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6	온몸근육풀기	1	EA	존치
			온몸 노갯기	1	EA	존치
			공중걸기	1	EA	존치
			윗몸일으키기	1	EA	존치
			마라톤운동	1	EA	존치
			벤치	2	EA	존치
			집수정	1	EA	존치
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07	표지판	1	EA	철거
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95	온몸근육풀기	1	EA	존치
			온몸 노갯기	1	EA	존치
			공중걸기	1	EA	존치
			벤치	2	EA	존치
			아카시아	1	주	존치
			아카시아	1	주	존치
			집수정	1	EA	존치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가드레일	37	M	철거

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0-7	표지판	1	EA	철거
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가드레일	14	M	철거
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표지판	1	EA	철거
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표지판	1	EA	철거
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5	신호등	1	EA	철거
1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신호등	1	EA	철거
1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신호등	1	EA	철거
1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표지판	1	EA	철거
1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9	표지판	1	EA	철거
1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6-12	신호등	1	EA	철거
1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웬스	64	M	존치
			옹벽	40	M	존치
1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2	웬스	52	M	존치
1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83	가로등분배기	2	EA	철거
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77	가드레일	9	M	철거
1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1	관정	1	EA	철거
2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7	물탱크	1	EA	철거
2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6	구조물	1	EA	철거
22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8	표지판	1	EA	철거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2	기타수목	2	주	철거
2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4	집수정	1	EA	존치
25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6	목재교량	11	M	존치
26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가로수	5	주	존치
27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1	표지판	1	EA	존치
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1	웬스	54	M	존치
29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4	가로수	10	주	존치
30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60	집수정	1	EA	존치
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90	표지판	1	EA	존치